

# 2020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DPRK

코로나19 시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New Cooperation Tasks for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COVID-19 era

2020. 11. 26.(목), 13:00~18:00

롯데 호텔 서울(3층 사파이어볼룸)







## Opening Remarks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Young-ae Choi. I am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South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all of you here today for taking part in our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DPRK. In particular, I realize that this year we are experiencing truly exceptional event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ank you all for your cooperation.

W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ve been organizing international symposia on this very issue since 2004. The purpose of these symposia has been to share, with global communities, the awareness of persistent presence of human rights concerns in North Korea, and to facilitate collaborations with various charter-based and treaty-based human rights bodies, and thus to build, through our equally persistent, industrious cooperation, a firm foundation for provi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or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jects.

The year 2020 will be remembered as the year of the pandemic, the year in which the entire human race has endured constant sufferings and anxieties under the threats of insidious virus.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

## Opening Remarks

worldwide are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contain the virus and to prevent new infections.

In this time of isolation and seclusi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urther restricted, in the name of COVID-19 prevention, what was already a trickling of cross-border movements of goods, people, and information. And as a result, today the world is even less certain of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exist in North Korea.

Earlier this year, at the 43r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itarian aids in an effort to control COVID-19 epidemic in North Korea, calling for the assessment of negative impacts of the current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The European Union (EU) has submitted a draft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dated October 30), in which i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gain a direct access to the country's most vulnerable sectors, and to provide them with adequate ai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our part,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new plan of cooperation, aimed at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the time of COVID-19.

I am confident that throughout today's symposium, we will engage in stimulating discussion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human rights are both universal and interrelated, and that what we discuss here today will be the seed of our futur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with the United Nations, and

---

## Opening Remarks

with various NGOs. I am also confident that through such mutual collaborations, at last,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ll come to fruition.

Finally, I would like to recognize Ambassador Simon Smith of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who has kindly accepted the role of keynote speaker for the symposium. I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distinguished speakers Professors Eul-chool Im, Dae-Hoon Lee, Dr. Ji-eun Kim, Bo-Hyuk Suh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rofessor Leif-Eric Easley of Ehwa Womans University, as well as the expert panel for partaking in the debates.

2020. 11. 26.

**Young-Ae Choi**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개회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입니다.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기구, 협약기구, 국제인권단체 등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확산하고, 북한인권 협력 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올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잠식된, 전 인류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일상을 버텨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과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코로나 19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약화시키기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10. 30.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시대에 북한인권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개회사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이라는 원칙 아래, UN 및 국제 NGO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심포지엄의 기초 발제를 맡아주신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하여 발제를 해주신 임을출 교수님, 이대훈 교수님, 김지은 한의사님,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대 교수님 및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1.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 Program

» Date : 2020. 11. 26. (Thu) 13:00 ~ 18:00

» Venue : Sapphire ballroom(3F), Lottehotel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13:00 ~ 13:30 (3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istration</li> </ul>
13:30 ~ 14:00 (3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ing Remarks : Young-ae Choi (Chairperson of NHRCK)</li> <li>- Keynote Speech : Proposal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he COVID-19 era : Simon Smith (British Embassy Seoul Ambassador)</li> </ul> </li> </ul>
14:00 ~ 14:10 (1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emorative Photo Shoot</li> </ul>
14:10 ~ 15:50 (10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derator : Moon-ja Jeong (Standing Commissioner of NHRCK)</li> <li>- Spe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l-chool Im (Associate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li> <li>•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li> <li>• Ji-eun Kim (ALCOM, Korean Medical Doctor)</li> </ul> </li> <li>- Deb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ng-Yul Park (Visiting Professor at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li> <li>• Denise K.H. Yoon (Executive Director at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li> </ul> </li> </ul> </li> </ul>
15:50 ~ 16:10 (2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eak Time</li> </ul>
16:10 ~ 17:50 (10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2.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derator : Sun-song Park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li> <li>- Spe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hyuk Suh (Research Fellow at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li> <li>•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li> </ul> </li> <li>- Deb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hm-Suk Baek (Associate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li> <li>•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at UN OHCHR Seoul)</li> </ul> </li> </ul> </li> </ul>
17:50 ~ 18:00 (10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osing</li> </ul>

## 프로그램

» 일 시 : 2020. 11. 26.(목), 13:00 ~ 18:0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13:00 ~ 13:30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 록</li> </ul>
13:30 ~ 14:00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사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li> <li>- 기조발제 : COVID-19 시대의 북한 인권 개선 제안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관 대사)</li> </ul> </li> </ul>
14:00 ~ 14:1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사진 촬영</li> </ul>
14:10 ~ 15:50 (10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장 : 정문자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li> <li>-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과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과제 : 임을출 (경남대학교 부교수)</li> <li>•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 위기와 SDGs를 통한 협력방안 :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li> <li>• 코로나19 이후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 김지은 (대한여한의사회 홍보이사, 한의사)</li> </ul> </li> <li>-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열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li> <li>•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li> </ul> </li> </ul> </li> </ul>
15:50 ~ 16:10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li> </ul>
16:10 ~ 17:50 (10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션 :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장 :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li> <li>-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li> <li>• 트럼프와 COVID-19 이후 남북한 협력을 위한 기회 :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부교수)</li> </ul> </li> <li>-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범석 (경희대학교 부교수)</li> <li>•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li> </ul> </li> </ul> </li> </ul>
17:50 ~ 18:0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 회</li> </ul>

# Contents

## Keynote Speech

### Proposal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he COVID-19 era

Simon Smith (British Embassy Seoul Ambassador) .....	1
------------------------------------------------------	---

## Session 1

###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 Speaker	
• Eul-chool Im (Associate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	5
•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 .....	23
• Ji-eun Kim (ALCOM, Korean Medical Doctor) .....	69
- Debater	
• Sung-Yul Park (Visiting Professor at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	81
• Denise K.H. Yoon (Executive Director at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97

## Session 2

###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Speaker	
• Bo-hyuk Suh (Research Fellow at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05
•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	153
- Debater	
• Buhm-suk Baek (Associate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	171
•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at UN OHCHR Seoul) .....	183

Profile .....	197
---------------	-----

# 목차

## 기조발제

### COVID-19 시대의 북한 인권 개선 제안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관 대사) ..... 1

##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주제발표

- 코로나19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과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과제  
 : 임을출 (경남대학교 부교수) ..... 5
-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 위기와 SDGs를 통한 협력방안  
 :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23
- 코로나19 이후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 김지은 (대한여한의사회 홍보이사, 한의사) ..... 69

- 토 론

- 박성열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 81
- 윤경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97

## 2세션

###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 주제발표

-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05
- 트럼프와 COVID-19 이후 남북한 협력을 위한 기회  
 :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부교수) ..... 153

- 토 론

- 백범석 (경희대학교 부교수) ..... 171
-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 183

Profile ..... 197



Keynote Speech

# Proposal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he COVID-19 era



Simon Smith (British Embassy Seoul Ambassador)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 Session 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코로나19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과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과제



Eul-chool Im (Associate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임을출 (경남대학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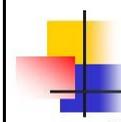


(Presentation for the Semina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Kim Jong-un Regime' s Response to COVID-19 and Cooperation Tasks for Human Rights Promotion**

**Professor Lim Eul-chool**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Table of Contents**

- North Korean Leadership's Perception and Response to COVID-19
- Impact of COVID-19 on People's Livelihood
- COVID-19 and Implications of the October 10 military parade speech at the 75th Workers' Party anniversary celebration
- State of COVID-19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 International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asks for Promoting the DPRK's Human Rights in the COVID-19 Era

## North Korean Leadership' s Perception and Response to COVID-19 (Rodong Sinmun Newspaper, January 3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 사상 반세기!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창간 44주(2006년 1월 19일) 198,306호(19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장

**정면 돌파전의 기본 방향**

신형주 중앙당 부총서기 겸 중앙당 부위원장 김정은은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정면 돌파전'이란 개념을 설명하며, '정면 돌파전'은 '정면 돌파'와 '정면 돌파전'의 합성어라고 설명했다. '정면 돌파'는 '정면 돌파'와 '정면 돌파전'의 합성어라고 설명했다. '정면 돌파전'은 '정면 돌파'와 '정면 돌파전'의 합성어라고 설명했다.

**신형주 중앙당 부총서기 겸 중앙당 부위원장 김정은은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할 것**

**신형주 중앙당 부총서기 겸 중앙당 부위원장 김정은은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당의 영도자 되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거  
위해 필적해 일해나가자!

**전면의 대지혜 넘치는 은정**

**10여개 대상공사 원외계 추진**

## Are lockdowns the best response?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authorities recognized that full COVID-19 prevention w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national safety and people's lives.
-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situation will spread beyond control if the quarantine system collapses. Therefore, the DPRK is in a state of tension.
- The DPRK authorities responded to COVID-19 more quickly, systematically, and orderly than before.
- It is considered the result of accumulated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the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nd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cs in the past.
- In particular, they responded to COVID-19 preemptively because medical facilities are underdeveloped and medicines are scarce, a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treatment.
- Well aware that their health-care and quarantine systems are underdeveloped, the DPRK authorities recognize that fundamentally stopping the influx of infectious diseases is the best countermeasure.

## Prioritizing quarantine over economy

- During the SARS epidemic in 2003 (lasting for eight months), Ebola in 2014, and MERS (lasting for five months) in 2015, the DPRK focused on preventing their spread by operating a crisis management system, such as closing borders early.
  - The country transitioned from the National Emergency System to the Maximum Emergency System.
  - Officials held meetings frequently for checking and giving instructions.
  - Lockdowns in Kaesong city and regional/local shutdowns were enforced.
- => It prioritized quarantine and risked economic disadvantages by blocking traffic from and to China.



## Party congress-centered response

- This year, Chairman Kim Jong-un made 39 public appearances (January–September), the lowest ever: (1) 164 appearances per year on average in the first 5 years (2012–2016), (2) 93 appearances per year on average in the last 3 years (2017–2019)
- His appearances are mostly related to the Party Congresses (about 36%): A total of 54 appearances since he took office (December 2011 – September 2020); 15 appearances this year alone, which is the most frequent. Among them, his attendance at Politburo Meetings (seven times) was the highest.
- The meetings were mostly about countermeasures against national disasters and crises (seven times on COVID-19 and four times on disasters).

39 Public Appearances	o Party congresses: 14 times* (36%) - Once at the Plenary Meeting, seven at the Politburo Meeting, three at the Executive Policy Council Meeting, and four at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s Meeting * The Party Congress was held 15 times in total. However, the Congres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Politburo Meeting and Executive Policy Council Meeting on August 25 was counted as one.
	o Others: 25 appearances (64%) - △ 11 visits to the military (military training and projectile launch) △ Nine visits to the public's livelihood (construction [Pyongyang General Hospital] and disaster sites) △ Five visits to other causes (paid tribute at the Kumsusan Palace of the Sun, made a condolence call to the family of the late Hwang Sunhee, and attended the Lunar New Year performance)

## DPRK's COVID-19-related measures

- January 21: Broadcasted on Korean Central TV for the first time
- January 24: Proclaimed the National Emergency Prevention System
- January 30: Organized the central and regional Emergency Anti-Epidemic centers under the Central Extraordinary Public Health Commission's supervision
- February 28: Chairman King Jong-un issued a "super-class" alert at a Politburo Meeting and addressed it as "a significant national project for public security"
- April 11: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Cabinet adopted a joint resolution, "Establishing thorough n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in response to a global pandemic," at a Politburo Meeting
- April 12: Supreme People's Assembly declared "Maintaining national emergency prevention system until the infectious disease disappears worldwide"
- July 2: Reviewed the project model implemented for the past six months at a Politburo Meeting and reemphasized it to strengthen the national emergency anti-epidemic projects
- July 25: Issued a "super-class" alert and a special alert to completely place Kaesong City (July 24) on lockdown at an emergency Politburo Meeting
- August 5: Decided to provide special aid (food and money) to Kaesong City at an Executive Policy Council Meeting
- August 13: Decided to ease the lockdown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including Kaesong, reject external aids, and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the national anti-epidemic projects at a Politburo Meeting
- August 25: Emphasized the "maintenance of the perfect anti-epidemic status" at a Politburo Meeting and reviewed the state of the national emergency anti-epidemic measures



Source: Korean Central TV, January 31, 2020

## Impact of COVID-19 on People's Livelihood

- The simultaneous reduction in official and smuggling trade
- Reduction in foreign exchange earnings because of suspended tourism
- A simultaneous decrease in purchasing power and consumption due to the decline in consumer good imports and income
- Reduction of factory utilization due to a decrease in intermediate good imports; many businesses shutting down because of prolonged trade suspension
- Blocked movement of goods, such as food, and contracted market activity because of long-term isolation of people and cargo; supply of food and daily necessities significantly reduced
- Increased volatility in prices and exchange rates
- Humanitarian aid reduction

## Extracted from the October 10 military parade speech at the 75th Workers' Party anniversary celebration

I thank them for being healthy, free from disease ... I thank them for their good health without any one of them having fallen victim to the malignant virus. The fact that we have defended all our people from the harmful epidemic disease sweeping the whole world can be said to be the natural duty and success of our Party. However, I am moved by this success, and as I see their healthy appearances, I can find no word other than "thanks" ... For our Party, the life of every one of our people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and their good health means the very existence of our Party, state, and everything on this land ... It is very gratifying and encouraging that everybody lives as a large harmonious family, although life is not affluent yet, and they are healthy without even one of them having fallen victim to the evil virus.

## State of COVID-19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Act on Prevention of Communicable Disease -> Introduced a new "Emergency Quarantine" law  
(Chapter 4: Principles to be followed by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 In case of death from an infectious disease, the body is treated as prescribed. A suspected case is notified immediately to a local quarantine station.
- Constituents are advised "not to move to other areas unnecessarily" and "not to gather in groups to eat food or engage in games in public places."
- Always wear a mask, and do not shake hands. Anyone under isolation is prohibited from leaving the area.

These obligations apply to foreigners in the region and locals as well.

## Strict compliance with emergency quarantine regulations

- Unconditional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gulations without exception is enforced.  
=> Arguing that the situation of the global health crisis confirms that "unconditional compliance with emergency quarantine regulations is critical as i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emergency quarantine projects."
- It is the residents' sacred duty to comply with emergency quarantine regulations strictly.
- Make it a daily practice to follow emergency quarantine regulations unconditionally anytime, anywhere, with the view of absolutely no exceptions in the emergency quarantine project.
- Conscientiously and consciously comply with all emergency quarantine regulations, including the mandatory wearing of masks.
- Pay attention to the movements of animals, including birds, and changes in the natural climate. Implement emergency quarantine regulations strictly, including inspection, quarantine, and disinfection, in all units handling imported goods.

## COVID-19 response: Border area declaration

1. 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 km계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할 것이다.  
 - 모든 국민들은 설정된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이다.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은 완충지대안으로 조직적인 승인없이 인원출입과 물자들을 수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다.  
 - 완충지대안에 조직적인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국민들은 공민증을 비롯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무조건 휴대할 것이다.

2. 국경차단물에 련한 도로, 철길들에서는 아간에 인원과 물건기재들의 통행을 금지할 것이다.  
 야간통행금지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1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할 것이다.

3. 북부국경일대에서 설정된 규율과 질서를 어기고 완충지대에 비조직적으로 들어갔거나 도로, 철길에 련한 국경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사격한다.  
 이외에 압록강, 두만강의 우리측 강안에 침입한 대상과 짐승은 예고없이 사격한다.

4.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은 대류행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북부국경일대에 설정한 행동질서를 엄격히 지켜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주민, 종업원들속에서 국경봉쇄사업과 비상방역사업에 처해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군대가 수행하는 북부국경

Source: Daily NK, September 17, 2020

##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 Ultra-strong quarantine measures adversely affect residents' right to life. Killing an individual and burning a body in the name of preventing infection violates the right to life guarante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ointed out with one voice, the DPRK's behavior directly violates Article 3 of the UDHR—"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security of person"—that all United Nations (UN) member states must obey.
- Moreover, it violates Article 6 of the ICCPR—"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a core obligation ratified by the DPRK.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ares the common sentiment that it falls under "a criminal act that blatantly violates the right to life, the most sacred and ultimate right of all human beings, and freedom of movement."

## International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asks for Promoting the DPRK's Human Rights in the COVID-19 Era

- Prolonged COVID-19, along with severe sanctions, is expected to worsen the DPRK's food, medical, and human rights situation.
- The DPRK authorities have no choice but to control the border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is a policy priority.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activities will be blocked.
- Consequently, the North Koreans' suffering will deepen. In this situation, we must seek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international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anctions that significantly impact North Koreans' human rights first and actively propose to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such sanctions should be eased at least during the duration of COVID-19.
-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sanctions and detrimental effects of COVID-19 on North Koreans' humanitarian situation. Given the unprecedented prolonged COVID-19 situation, it is urgent to understand how sanctions and COVID-19-related controls and lockdowns affect North Koreans.

- The UN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hould more actively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suggest cooperation measures.
-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grab this opportunity to accept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not only rely solely on its closed and inhumane quarantine policies but also jointly respond to COVID-19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 In terms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actical cooperation by building a life safety community related to health-care, disaster, quarantine,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jects is essential in conjunction with human rights promotion.
  - Cooperation to strengthen the DPRK's capacity to respond to COVID-19
  - Promotion of open and transparent sharing of COVID-19-related inform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A full investigation of the DPRK's medical infrastructure, delivery system, disease types, and prevalence in advance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발제문]

## 코로나19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과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과제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순서

- 코로나19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대응
- 코로나19가 민생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와 10.10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함의
-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 실태
-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생명권 위반
- 코로나19 아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남북협력과제



## 경제보다 방역에 우선 순위

-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8개월 지속),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5개월 지속) 사태 때도 조기 국경폐쇄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
  - 국가비상방역체계 -> 최대비상체제로 전환
  -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점검 및 지시
  - 개성시 봉쇄, 구역별, 지역별 폐쇄 조치
- ➡ 중국과의 왕래 차단 등에 따른 경제 불이익 감수하고 방역에 우선 순위



## 당 회의체 중심의 대응

- 올해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총 39회(1~9月)로 역대 최저 : △초기 5년('12~'16년) 연평균 164회 △최근 3년('17~'19년) 연평균 93회
- 공개활동 중 당 회의체 관련 비율(약 36%)은 역대 최고 : 김정은 집권 이후 총 54회('11.12.~'20.9.) 당회의 개최 중 올해만 15회로 가장 빈번, 이 가운데 정치국회의는 7회로 최다
-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 관련 회의(코로나 7회, 재해 4회)가 최다

공개활동  
총 39회

○ 당회의: 14회\* (36%)

- △전원회의의 1회 △정치국회의의 7회 △정무국회의의 3회 △중앙군사총 4회

\*당 회의는 총 15회 개최이나 8월 25일 정치국·정무국회의의 동시 개최로, 1회로 집계

○ 기타 현장방문: 25회 (64%)

- △군사 11회 (군사훈련 및 발사체 발사 등)

△민생행보 9회 (평양종합병원 등 건설현장 및 재해현장)

△기타 5회 (금수산공전 참배, 故 황순희 조문 및 설명절 공연관람)

##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 1.21 중앙TV 최초 보도
- 1.24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
- 1.30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도 아래 중앙·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 조직
- 2.28 당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 위원장 ‘초특급방역조치’ 지시 및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 사업’ 임을 언급
- 4.11 당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국무위·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 채택
- 4.12 최고인민회의,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없어질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 유지’
- 7.2 당 정치국 확대회의, 6개월간 사업정형 총화 및 국가비상방역사업 강화 재강조
- 7.25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최대비상체계’로 이행 및 개성시 완전봉쇄(7.24)·특급경보 발령
- 8.5 당 정부국 회의,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보장금 특별지원 결정
- 8.13 당 정치국 회의, 개성시 등 휴전선지역 봉쇄 해제, 외부지원 거부, 국가적으로 정연한 방역사업체계를 위한 기구 창설
- 8.25 당 정치국 확대회의, ‘완벽한 방역형세 유지’ 강조, 국가비상방역태세 점검



## 코로나19가 민생에 미친 영향

- 공식무역과 밀무역 동시 감소
- 관광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
- 소비재 수입, 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과 소비 동시 감소
- 중간재 수입 감소에 따른 공장가동을 축소, 상당수 기업들은 무역중단 장기화로 고사위기
- 식량 등 물자이동이 막히고, 사람과 화물의 장기간 격리 등으로 시장활동 위축 : 식량과 생필품 공급 대폭 감소
- 물가와 환율 변동성 심화
- 인도주의 지원 축소

## 10.10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주목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비상방역조치 실태

전염병예방법 -> 비상방역법 신설

제4장 : 기관, 기업, 개인이 준수해야 할 원칙

-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체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도록 했고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
-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체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도록 했고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
-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으로 유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집단으로 모여 음식을 먹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악수를 하지 말며, 격리자는 격리장소를 이탈 금지
- 이 같은 의무는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역내 외국인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 비상방역규정 엄수

- 방역 규정을 예외 없이 무조건 준수
- =>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비상방역규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비상방역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
- 비상방역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주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본분
- 비상방역사업에서는 특수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비상방역규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비상방역규정들을 양심적으로, 자각적으로 준수
- 조류를 비롯한 동물들의 이동과 자연기후의 변화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입물자를 취급하는 모든 단위에서 검사검역, 소독을 비롯한 비상방역규정을 보다 엄격히 시행

## 코로나 대응 : 국경지대 포고문

1. 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 km계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할 것이다.  
 - 모든 공민들은 설정된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이다.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완충지대안으로 조직적인 승인없이 인원출입과 물자들을 수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다.  
 - 완충지대안에 조직적인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공민들은 공민증을 비롯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무조건 휴대할 것이다.

2. 국경차단물에 련한 도로, 철길들에서는 아간에 인원과 물건기재들의 통행을 금지할 것이다.  
 야간통행금지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1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할 것이다.

3. 북부국경일대에서 설정된 규율과 질서를 어기고 완충지대에 비조직적으로 들어갔거나 도로, 철길에 련한 국경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사격한다.  
 이외에 압록강, 두만강의 우리측 강안에 침입한 대상과 짐승은 예고없이 사격한다.

4.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대류행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북부국경일대에 설정한 행동질서를 엄격히 지켜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주민, 종업원들속에서 국경봉쇄사업과 비상방역사업에 처해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모든 공민들은 완충지대에 비법출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군대가 수행하는 북부국경

자료: 데일리엔케이, 2020년 9월 17일

## 방역조치와 생명권 위반

- 조강력방역조치는 주민들의 생명권에도 악영향: 감염 차단을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노출
- 북한의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 위반
-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적

##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남북협력 방안

-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 북한 당국은 정책적 우선 순위인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도 아예 막을 가능성이 농후
- 이럴 경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인권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우선 국제협력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요소들을 파악해 적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제재완화조치를 취해줄 것을 유엔 안보리에 적극 건의
-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 :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통제와 폐쇄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 북한 당국에도 이 기회에 국제보건규범을 공유하면서 폐쇄적인 그리고 비인도적인 방역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한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코로나19에 공동대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
- 남북협력 차원에서는 인권증진과 연계, 보건의료, 재난, 방역, 기후환경 분야 사업 등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남북협력 긴요
  - 북한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국제사회와 공유 건의
  - 북한의 의료인프라, 전달체계, 질병의 종류 및 유행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

## Session 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 위기와 SDGs를 통한 협력방안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의 위기와 SDGs를 통한 협력

이대훈 (대표 발표)

(이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한 이대훈, 이주영, 박진아, 윤지영, 문아영, 한가선의 공동연구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2020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국제개발처(USAID)는 2019년 하반기 기준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2019년 북한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식량안보의 큰 위기를 초래했다. 유엔은 2020년에도 북한의 식량안보와 영양결핍의 문제, 보건과 식수, 위생, 청결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으나 자연재해 및 농업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20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는 2020년 대북지원사업 예산이 2019년 대비 11%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유엔은 북한지원을 위해 1억2000만달러(약 142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대북제재등의 영향으로 실제 모금액은 목표의 27% 수준인 3200만달러(약 380억원)에 그쳤으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900만달러를 한국정부가 지원했다. 지원금 감소와 연동되어 영양 분야와 물, 위생, 청결분야 등에서 대규모 지원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북제재를 둘러싼 다른 여건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긴급한 상황은 북한인권의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바깥으로 더욱 밀려나게 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처한 인권상황은 이른바 외재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때에 개선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북한은 기존에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한 것과 관련 회의들에 참석하는 바, 북한 역시 내재적 접근의 한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외재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직면한 인권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엔은 북한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2’을 수립하고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 4가지 우선순위를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여기에 북한의 현실에 맞게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며 성평등과 여성권리를 강화하고 환경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UPR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 당국은 지난 5년여 간 주로 사회권과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되며 제3차 UPR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제인권규약 이행과 관련해 유엔과 기술협력하는 데에도 일차 관심을 보인바 있다.

COVID-19를 통해 국제사회는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 단위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초연결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문법과 방식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해지고 있다. 북한 인권 증진에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 1.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유엔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와 인권 보호 기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기반을 달리하는 두 체계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유엔헌장에 기반한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에서 채택된 주요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기구 중심의 체계이다.

유엔헌장 기반체계는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의 주요 기관이 포함되며 특히 2006년 총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HRC)의 주요 제도—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등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핵심 인권 제도이다. 이외에도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사무총장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임시로 설치되는 사실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활동 등을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의 장에 참여한다면 분명 북한 인권의 개선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자 다수가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함으로써 피검토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회원국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하는 회원국으로서 인권 침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부의 인권 인식의 변화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제도 자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결과는 우리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북한의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북한이 수용한 권고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추후에 북한이 주목하거나 또는 거부한 권고 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기구의 접근과 이들 기구의 인권기반접근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북한 또는 남북간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볼 수 있다.

아래 표는 북한 제1차에서 3차까지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나온 권고를 이슈별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 제1~3차 UPR 이슈별 권고<sup>1)</sup>]**

	제1차		제2차		제3차	
1	특별절차	30건	사법	45건	국제규범 비준	46건
2	국제규범 비준	28건	구금	42건	아동의 권리	35건

1) 권고별 이슈 관련 통계는 UPR-Info Database에 근거한 것으로, UPR-Info의 자료 분류가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나, 북한의 UPR 권고의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용하다. UPR-Info Database of Recommendations: <<https://upr-info-database.uwazi.io/en/>> (검색일: 2020.10.20.).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제1차		제2차		제3차	
3	여성의 권리	18건	국제규범 비준	41건	특별절차	32건
4	식량권	17건	특별절차	31건	여성의 권리	32건
5	아동의 권리	17건	여성의 권리	29건	구금	29건
6	인권조약기구	15건	표현의 자유	24건	건강권	23건
7	기타	14건	사형제도	23건	기술지원·협력	23건
8	사법	12건	식량권	21건	교육권	22건
9	구금	11건	아동의 권리	19건	고문 등	21건
10	고문 등	10건	고문 등	19건	사형제도	17건
11	사형제도	9건	UPR 절차	18건	장애인권리	17건
12	이동의 자유	9건	건강권	17건	식량권	17건
13	건강권	8건	인권조약기구	16건	노동권	15건
14	기술지원·협력	7건	기술지원·협력	15건	표현의 자유	14건
15	표현의 자유	6건	강제실종	14건	인권조약기구	13건
16	인권 일반	6건	사회권일반	11건	사법	12건
17	종교·사상의자유	5건	교육권	11건	발전권	10건
18	발전권	5건	노동권	10건	종교·사상의자유	9건
19	교육권	5건	인권교육·훈련	9건	인신매매	8건
20	UPR 절차	5건	장애인권리	6건	UPR 절차	8건
21	장애인권리	4건	종교·사상의자유	6건	강제실종	7건
22	사회권 일반	4건	국가인권기구	6건	인종차별	7건
23	집회·결사의 자유	4건	식수 및 위생권	6건	언론의 자유	6건
24	시민사회	3건	이동의 자유	4건	인권교육·훈련	6건
25	초사법적 사형	3건	기타	4건	기타	6건
26	인권교육·훈련	3건	인종차별	4건	사회권 일반	5건
27	인종차별	3건	발전권	4건	국제인도법	5건
28	인신매매	3건	언론의 자유	3건	인권 일반	4건
29	자유권 일반	2건	인권 일반	3건	국가인권기구	4건
30	국가요원의인권침해	2건	시민사회	2건	환경과 인권	3건
31	이주민	2건	집회·결사의 자유	2건	빈곤	3건
32	난민	1건	이주민	2건	시민사회	2건
33	강제실종	1건	빈곤	2건	집회·결사의 자유	2건
34	언론의 자유	1건	주거권	2건	인권옹호자	2건
35	에이즈 감염병	1건	인신매매	2건	프라이버시	2건
36	공공 안보	1건	선거	1건	주거권	2건
37	식수 및 위생권	1건	환경과 인권	1건	자유권 일반	1건
38			초사법적 사형	1건	초사법적 사형	1건
39			인권옹호자	1건	불처벌	1건

	제1차		제2차		제3차	
40			국가요원의인권침해	1건	원주민	1건
41			불처벌	1건	이주민	1건
42			국제인도법	1건	소수자 권리	1건
43					SDGs	1건
44					비분류	22건
	합계	167건	합계	268건	합계	262건

가장 최근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특별절차, 여성의 권리, 구금, 건강권, 기술지원·협력, 교육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사형제도, 장애인 권리, 식량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등의 인권 사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북한은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 권리, 건강권, 기술지원 및 협력, 교육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등의 사안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시한 인권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주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비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건강권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산가족 관련 약속 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력,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시 대표단에 장애인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호 등 한국정부의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권고 이행을 위해 북한에 남북한 협력을 우리 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북한 UPR 제1-3차,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과 수용 여부]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사항	수용 여부
제1차	42.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유엔인권메커니즘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협력하라.	거부
	75.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라.	수용
제2차	125.18. COI의 권고사항,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를 수락하고 충실히 이행하라.	거부
	125.48. 납북자, 전쟁 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라.	거부
	125.59. 정치범 수용소 폐쇄하고,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철폐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기구와 협력하라.	거부
제3차	126.11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라.	수용
	126.109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하라.	수용
	126.149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관련 약속을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라.	수용
	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라.	수용

자유권위원회는 2001년 7월 북한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01년 8월 27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자유권위원회의 2001년 최종견해<sup>2)</sup>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자유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내용은 \*을 표시하여 강조하였다.

2)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형벌 완화	• 사형 대상 범죄를 33개에서 5개로 제한 환영
	조약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2001년 2월) 환영
	이산가족	• 2000년 6월 15일 선언 이후 대한민국과 당사국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세 차례 실시 환영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사법부의 독립	• 헌법상 중앙재판소가 최고인민회의의 하부기관인 점, 판사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적인 점, 형법상 판사가 “부당한 판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우려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권고
	규약과 국내법의 충돌	• 차기 보고서에 국내법과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인권기구	• 권리 침해 시 독립적인 기구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 설립 검토
	국제기구	• 국제인권단체 및 국제기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생명권	• 식량 및 영양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와 국제사회와 협력해 1990년대 북한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가뭄과 기타 자연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치가 미흡한 점을 우려하며, 생명권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6호에 따라, 영양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 등 영아 사망을 줄이고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조치 채택 권고
	사형제	• 사형 가능 범죄 항목을 제한한 점 긍정적이나, 5개 사형 대상 범죄 중 4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이며, 용어의 포괄성으로 인해 사형부과가 주관적일 수 있고, 규약 제6조 제2항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형법을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과 공개처형의 중지를 권고
	죄형법정주의	•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성격과 경중이 유사한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준하여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제10조(유추적용규정)는 자유권규약 제15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 제10조 폐지 권고
	고문 및 가혹행위*	• ‘법집행 일꾼’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려하며, 국가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 사건들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신속히 조사할 것 • 법집행 일꾼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구금 및 수용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시스템 마련을 권고
	피구금자의 처우	• 교화소 등 모든 구금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인도적 처우 보장 • 모든 피구금자들에 대한 충분한 음식과 적절한 의료 제공 •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허용

구분	주제	내용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강제노동 금지	•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약 제8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노동법 개정
	체포·구속 시 인권보장	• 재판 전 구금 관행과 예심의 규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재판 전 구금의 기간, 사유에 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담을 것 • 체포나 구속 시 법관이 신속히 그 합당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피구금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가족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동의 자유	• 국내 이동 시 여행증명서 요구 폐지 검토 • 해외여행 시 행정허가, 외국인에 대해 출국비자(exit visa) 요구를 일 반적 법규로 하는 것 폐지하고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것
	외국인 추방 시 적법절차 원칙	• 외국인을 추방할 때 신중을 기해 집행한다고는 하나, 외국인 추방을 규율하는 법과 절차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외국인을 추방하기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와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 •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외국인 추방을 규율하는 법률 채택을 검토할 것
	종교의 자유*	• 종교인 현황 및 및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실질 적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표현의 자유*	• 출판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외국 언론 접근 제한 조치를 중단할 것 • 북한 언론인의 해외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개념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집회의 자유*	• 어떤 사유로 집회 개최를 불허하는지, 집회 개최 불허 결정에 대한 이 의 제기 절차가 있는지 추가적 정보 제공
	참정권	• 새로운 정당 창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정당 창설 및 등록에 대한 법규가 없다고 북한 대표단이 설명하였으나, 이는 대표자 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권(자유권규약 제25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완전히 보장할 것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보 통·평등 선거에 따라 비밀투표를 행하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 명을 보장할 것)
	인신매매*	• 여성 인신매매 사례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협력적 정신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성평등	•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 증진을 위한 조치 채택 • 주요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보수 수준에 관한 자료 제공	

자유권위원회는 위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기 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1년 안에 고문 및 가혹행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신매매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기타 권고사항과 규약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3차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북한 정부에 요청하였다.

북한이 1997년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보하였으나, 1999년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점은 자유권위원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후 2004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제3차 국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반면, 다른 주요 인권조약은 추가로 비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중 사법부의 독립 보장, 강제노동 금지, 이동의 자유 보장, 새로운 정당 창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마련,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은 자유권규약 이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나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손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유권규약상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자유권규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국가들의 권고도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유권규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와 같은 자유권위원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나 다른 주요인권조약기구에서 나온 권고 중 자유권 관련 내용들에 주목하여, 북한이 유엔인권기구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자유권 상황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하여 국가보고서를 현재까지 1984년 12월 18일(최초 보고서)<sup>3)</sup>, 2002년 4월 9일(2차 보고서)<sup>4)</sup> 두 차례 제출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1987년과 2003년 지금까지 두 차례 북한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2003년 11월 19일-20일 북한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03년 12월 12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2003년 최종견해<sup>5)</sup>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

3) UN Doc. E/1994/6/Add.7 (1985).

4) UN Doc. E/1990/6/Add.35 (2002).

에 표로 정리하였다.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생산 기반 재건 등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당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들의 노력</li> <li>• 당사국이 위원회와 협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li> <li>• 무상의료가 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li> <li>• 11년제 무상보편교육의 시행</li> </ul>
규약 이행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안보, 기반시설 재건의 고비용 등 다방면에서 당사국이 직면한 어려움</li> </ul>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규약 이행	• 규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국제지원과 협력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포함 국제 및 지역기구와 국제 협력과 지원 지속적 모색
	사법부 독립	•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보장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 규약의 조항이 국내법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와 국내법원에서의 규약 직접 원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권리 구제	• 사회권 관련, 신소청원법에 따른 개인 신소제도의 정확한 기능과 이 법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판례에 대한 정보 제공
	인권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li> <li>•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주요 ILO 협약 비준</li> </ul>
	성차별 금지	•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준수를 위해 국내법 검토 및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를 택할 것
	노동권	• 일자리 혹은 더 나은 생활여건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중지를 위해 관련 국내법 검토
	단결권 단체행동권	• 독립적인 노동조합 결성권, 파업권 포함 노동조합에 관한 규약상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검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가족수당,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5)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구분	주제	내용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 지출을 위한 예산 증액과 취업 지원 (특히 여성) 방안 강구
	가족에 대한 보호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교육권	• 자연재해로 인해 학습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동들의 학교 복귀를 포함한 아동의 교육권 보장 지원 노력 지속 •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장애에 대한 학생·교사·가족의 인식 개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훈련
	아동에 대한 보호	• 요보호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가정 양육 제공과 정규 교육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강화
	식량권	• 국제식량 원조에 대한 취약집단의 동등한 접근 및 우선적 식량 제공을 보장하는 적절한 장치 마련 •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및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데 관련 당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건강권	• 산전 보건서비스 및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 UNDP, WHO, UNAIDS 등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HIV/AIDS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혈액 안전 관리 등 종합적인 예방 전략 구축
	위원회의 방문	• 위원회가 북한을 방문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규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제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북한에 대한 2003년 권고에서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과의 국제협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을 규약 이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강조하였다. 사회권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으로 제시하는 분야이자, UNICEF(유니세프),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권 상황의 개선은 북한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선으로 하여 국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의 폭을 점차 더 넓혀 나가는 것이 유엔기구들을 매개로 한 북한 인권 개선의 단계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86년을 시작으로 2002년, 2007년, 2016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협력 태도를 보여 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998년, 2004년, 2009년, 2017년 지금까지 네 차례 북한의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하였다. 가장 최근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17년 9월 20일에 있었으며, 10월 23일에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17년 최종견해<sup>6)</sup>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에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내용은 \*표기를 하여 구분하였다.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인권조약	•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2014.11.10.) 환영
	이행 사항	•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와 전반적 의무교육에 관한 이행 사항 환영
이행 저해 요소		• 당사국 대표단이 언급한 경제제재가 당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동의 권리 향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입법> • 아동권리보장법(2010) 채택 환영, 법률 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 • 법률 시행 지원 및 국제사회의 모범사례와 교훈 공유 위해, UNICEF 등과의 기술협력 모색
		<포괄적 정책과 전략> •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2011-2020)’ 채택 환영하며, 폭력, 착취, 빈곤 관련 보호조치 포함 • 계획 이행을 조정할 정부기관 명확히 설정 • 계획 이행의 진척 사항 주기적 공개 • 아동권리 보호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제공 • 국가재난대응계획 수립에서 유엔 및 기타 파트너들과 조정 활동 강화

6) UN Doc. CRC/C/PRK/CO/5 (23 October 2017).

구분	주제	내용
		<p>〈자원 할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궁핍 상황에서도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위한 예산 배정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체계·프로그램·정책 강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활용 방법 주기적 검토</li> <li>보건·교육·사회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 및 도농 간 자원 공평한 분배</li> <li>소외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 최저선 설정하고, 경제적 궁핍, 자연재해 및 기타 비상상황에서도 예산 최저선 보장</li> </ul>
		<p>〈자료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 전 분야에 걸쳐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분류</li> <li>유관 부처에서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자료와 지표 활용</li> <li>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 가이드라인 고려</li> <li>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UNICEF 등과 기술협력 강화</li> </ul>
		<p>〈독립적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한 조치</li> <li>재정, 수입사항, 면책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의 독립성 보장</li> <li>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ICEF, UNDP와 기술 협력 모색</li> </ul>
		<p>〈전파, 인식제고, 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보육교사·학교 교원·아동 및 일반 대중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 제고</li> <li>아동 관련 전문집단 대상 협약에 따른 책임 교육</li> </ul>
		<p>〈시민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인 시민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호적 환경 조성</li> <li>아동권에 관한 법률, 정책 등 수립·이행·평가에 아동권 단체 참여 토록</li> </ul>
		<p>아동의 정의</p>
	<p>일반 원칙</p>	<p>〈비차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헌법」 제65조와 「아동권리보장법」 제3조 등 차별금지 법률의 이행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li> <li>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아동차별 중단</li> <li>농촌과 오지 거주 아동, 북한국적이 없는 아동, 장애아동, 특히 그 중 여아와 관련한 차별금지법률의 이행에 관한 정보 주기적 공개</li> </ul>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구분	주제	내용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과 부모의 불필요한 분리 및 거주형 보호기관 위탁 방지 등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고 해석·적용할 것 • 각 분야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마련 • 정부 정책과 관행이 아동권에 미치는 영향 사전/사후 평가 제도 수립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 영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평등, 발육 부진과 저체중을 야기하는 아동 영양실조, 고된 신체적·정신적 활동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 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화
		<아동의 견해 존중>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진행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 개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출생등록 및 국적> • 북한 국적 어머니를 둔 외국 거주 아동이 자신이나 어머니의 강제 복송 없이 출생을 등록하고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양자협약 체결 검토
<표현의 자유> • 아동의 표현의 자유 증진 • 아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정보와 견해를 찾고 전달할 자유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박해 예방 및 근절 • 종교적 관용 장려와 사회적 대화 추진 • 종교의 자유 제한에서의 비례성 원칙의 적용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채택 •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제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포함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효과적인 접근 보장 • 강요된 성관계 포함 직장 내 강간에 대해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구분	주제	내용
		<p>〈사생활에 관한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 및 건강 문제에서 아동의 사생활 권리 보호를 위한 범규 위반 시, 이를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 시행</li> </ul>
		<p>〈정보접근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정신적·윤리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포함해,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 증진</li> <li>• 아동이 “적대 방송 청취 및 적 선전물 수집·보관·유포”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형법」 제185조 등 관련 법률 재검토</li> </ul>
	아동에 대한 폭력	<p>〈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16.2와 관련해</li> <li>• 강제복송된 아동 포함,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명확하게 금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 수립</li> <li>• 아동에 대한 일체 고문과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기소</li> <li>• 고문 및 학대 혐의 수사 중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유죄 확정 시 처벌하고 재판 절차와 선고 결과를 공개할 것</li> <li>• 법집행관 대상 아동권 교육</li> <li>•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li> </ul> <p>〈체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아동 관련 시설, 정치범 수용소 포함 모든 교정시설 등 모든 상황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 조속 검토</li> <li>• 모든 교육기관에서 체벌금지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li> <li>• 15세-17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교양 조치’에 체벌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체벌을 포함하거나 그에 필적하는 「형법」상의 형사 처벌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하지 말 것</li> <li>• 부모와 교원 대상 긍정적이고 비폭력이며 참여적인 양육과 훈육 장려 조치 강화</li> </ul> <p>〈폭력, 학대, 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16.2에 주목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처벌법 검토</li> <li>• 국경 지역 소재 거주형 보호기관과 보호소 내 아동 상황 평가 조속히 시행하고, 성적 학대 포함 아동에 대한 일체의 폭력행위를 수사·기소·처벌할 것</li> <li>• 성매매와 결부된 여아 및 여자 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에 주의를 기울일 것</li> <li>• 아동 대상 폭력 방지와 대처를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li> <li>• 폭력 방지책 수립에 아동 참여 방안 강구</li> </ul>

구분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대상 폭력 사례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li> <li>• 아동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 강화</li> <li>• 아동 대상 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와 협력 모색</li> </ul>
		<p>〈상담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상담전화를 전국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li> </ul>
	가정환경 및 대안보호	<p>〈가정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공동 책임 증진 활동 및 아동의 교육과 발달에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활동 강화</li> <li>• 부모의 아동 양육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지원</li> <li>•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되는지 이혼 관련 법률 검토·확인</li> <li>•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최후의 수단이 아닌 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할 것</li> <li>• 북한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아동과 정기적 의사소통과 개인적 관계 형성을 허용·증진하기 위한 조치</li> </ul>
		<p>〈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의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호 가이드라인과 위원회의 이전 최종 견해를 환기시키며, 가정 중심의 대안적 보호를 위해, 아동이 공공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 진행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지원</li> <li>• 장애아동 포함 아동의 공공보호시설 위탁 여부 결정 기준과 세이프 가드를 아동의 필요와 의견, 최선의 이익 고려하여 수립. 부모의 이혼을 시설 위탁 근거로 간주하지 말 것</li> <li>• 아동의 시설 입소와 가정위탁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절차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 보고 및 시정 체계를 통한 해당 시설 모니터링</li> <li>• 시설 아동의 상시적 상호작용과 사회재통합을 위해, 수용소 같은 시설 건립 정책 재검토</li> <li>• 탈시설화 경험과 모범사례, 교훈 등을 위해 UNICEF 등과 기술협력 모색</li> </ul>
		<p>〈입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적 고려를 위해 입양법의 재검토와 양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규정 삭제</li> <li>•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1993년) 가입 고려</li> </ul>
		<p>〈피구금 부모를 둔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범죄를 이유로 아동이 처벌·제재·구금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정치범 수용소 포함, 수용시설에 구금된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정기적 접견 보장</li> </ul>

구분	주제	내용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p>〈장애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4 및 11과 관련, 장애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채택 및 장애아동을 포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li> <li>•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위해 효율적인 장애 진단 체계 수립</li> <li>• 포용적 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 수립하고 특수시설 및 특수학급 배치 대신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 점진적으로 우선되도록 함</li> <li>• 특수교사와 전문가 양성, 포용적 학급에 배치하여 아동의 학습적 필요 개별적 지원</li> <li>• 12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부합하도록 장애아동을 위한 9년제 교육과정 검토</li> <li>•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li> </ul>
<p>〈건강 및 보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3.2 및 3.8 관련,</li> <li>•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li> <li>• 농촌과 오지 포함 북한 전역 모든 아동에 대한 의약품 무상 또는 저가 공급</li> <li>• 보건인프라 확충 및 보건인력 교육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li> <li>• 5세 미만 아동의 예방가능한 사망이나 질환 발생 감소 및 종식을 위한 정책 시행에 인권기반 접근 적용, OHCHR의 기술지침 고려</li> <li>• 이를 위해, UNICEF와 WHO 등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모색</li> </ul>		
<p>〈정신 보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시행 및 아동의 발달상의 욕구 고려</li> </ul>		
<p>〈청소년 보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3.7 관련,</li> <li>•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 진행</li> <li>•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성 및 재생산 보건 정책 채택, 의무교육과정에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성 및 재생산 보건 교육포함</li> <li>• 비밀이 유지되는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보장</li> </ul>		
<p>〈HIV/AI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대상 HIV/AIDS 예방 관련 정보 제공</li> <li>• UNICEF와 UNAIDS, UNFPA로부터 기술지원 모색</li> </ul>		

구분	주제	내용
		<p>〈영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2.1과 2.2 관련</li> <li>•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실행계획’에 대한 독립적 검토</li> <li>• 아동 영양실조의 근본 원인 파악하고 아동의 급·만성 영양실조 관련 최신 정보 주기적 공개위해, 아동의 식량 안정 및 영양 관련 자료 체계적 수집</li> <li>• 공공배급을 통해 제공되는 식량의 영양과 품질, 제공횟수 포함, 배급제가 아동의 식량 안정과 영양에 미치는 효과 평가</li> <li>• UNICEF와 FAO로부터 기술지원 모색</li> </ul> <hr/> <p>〈기후변화가 아동권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유엔 국가팀과의 협력 환영. SDG 13.5 관련,</li> <li>• 홍수와 가뭄 같은 기후 관련 비상사태로 식량 접근 차질 시, 아동에게 영양실조 치료 즉각적 제공</li> <li>•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관련 내용 교과과정과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li> <li>• UNICEF 및 WFP 등과 지속적 협력 및 재해 위험 감소와 대응 관리, 대비 계획 등에서 아동권에 각별한 주의</li> </ul> <hr/> <p>〈생활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6.2 관련,</li> <li>• 물과 위생, 영양 관련 개입 우선적 추진</li> <li>• 기술 및 ‘중력 기반 물 공급 시스템(gravity-fed water system)’ 활용에 관한 남-남 학습교류 참여 권고</li> <li>• 주민이 생계를 꾸릴 기회 증진 및 촉진</li> </ul>
	<p>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p>	<p>〈직업교육 포함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4 관련,</li> <li>• 학습·휴식·여가·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방해하는 노동 수행을 아동에게 요구하지 말 것</li> <li>• 학교 진학, 교육 유형, 교사로부터 받는 대우와 관련, 아동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아동 차별 금지 조치 실시</li> <li>• 학교에서의 현금·식량·자재 기부 요구에 대한 효과적 금지 조치 조속히 시행</li> <li>• 교사의 학생 학대나 체벌 방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체벌의 실질적 금지, 신체적·정신적 안전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li> <li>•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교 중퇴 방지</li> <li>• 학생의 관심에 따른 과목 선택의 자유 포함,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증진</li> </ul>

구분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지역과 오지 포함, 교육의 질과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li> <li>• 학습과 포용성,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의 역량 제고 및 전인적 발달 도모를 위해 아동 친화적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치 시행</li> <li>•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학업 성취도 정보 주기적 공개</li> <li>• 이러한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UNICEF 및 UNESCO 등과의 기술 협력 모색</li> </ul>
		<p>〈교육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재가 학문적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것</li> <li>• 아동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평화·관용·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둘 것</li> <li>• 모든 연령 아동 대상 평화교육과정에서 평화적 갈등 해법 강조</li> <li>• 이와 관련, UNICEF 및 UNESCO로부터 기술 지원 모색</li> </ul>
		<p>〈영유아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4.2 관련,</li> <li>•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사-아동 비율 적절히 유지, 양질의 보육·심리사회적 지원과 자극 제공,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li> </ul>
		<p>〈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인권과 아동의 권리 반영</li> </ul>
		<p>〈휴식과 여가, 오락,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휴식 및 여가의 권리 보장, 자신의 연령에 걸맞은 놀이와 오락 활동 선택권리 보장</li> <li>• 자신과 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식견을 기를 권리 보장</li> </ul>
		<p>〈송환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환 아동 및 송환된 북한 여성의 아동에게, 생명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 제공</li> <li>•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협약」 가입 고려</li> </ul> <p>〈무력분쟁상의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 협상 진행 시, 아동 최선의 이익 충분히 고려,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에 우선순위 부여</li> <li>• 아동, 특히 남아 및 남자청소년에 대한 조기 군사화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모병 금지 조치 채택</li> </ul>
	<p>특별보호조치</p>	

구분	주제	내용
		<p>〈아동노동 포함 경제적 착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8.7 관련,</li> <li>• 공식 및 비공식 부문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위험한 작업 사용 금지를 위해 노동 및 아동 관련 법률 개정</li> <li>• 교육의 일부로 아동에게 '경제과제' 수행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 실시 및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아동의 동등 대우 보장</li> <li>• 아동의 농사일 대규모 강제 동원 방지, 대규모 농업 동원 참여에 대한 최소 연령 및 작업시간 제한 규정 수립</li> <li>• 18세 미만 아동의 돌격대 배치 관행 금지 및 모든 아동에 대해 학업 지속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li> <li>• ILO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과 제138호 노동최소연령에 관한 협약(1973) 비준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고려 및 이와 관련 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기술 지원 모색</li> </ul>
		<p>〈노숙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밖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아동 수 조사 및 근본 원인 연구</li> <li>• 노숙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복귀나 대안보호 위탁 등의 지원 제공, 아동 최선의 이익 온전히 존중,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발적 견해 충분히 고려</li> </ul>
		<p>〈매매, 인신매매, 납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신매매 및 납치된 아동을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로서 보호, 적절한 회복과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li> <li>•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억제·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비준 고려</li> </ul>
		<p>〈소년 사법 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 사법 전담 제도와 절차 수립, 전담 판사와 검사 임명, 해당 판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 실시</li> <li>• 법적 분쟁 중인 아동에게, 사회적 교양 조치 집행 기간 포함, 법적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자격을 갖춘 독립적 변호사의 무상 변론 보장</li> <li>•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 최소화, 구금 중단을 위해 구금상황 주기적 검토, 아동과 성인의 구금 공간 분리,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 포함 피구금자의 처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li> <li>• 독립적이고 아동 친화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아동 민원 접수 및 처리 체계 구축, 모든 민원 사항 조사, 권리 침해확인 시, 해당 법집행관 기소·처벌</li> </ul>

구분	주제	내용
		<p>〈범죄 피해 아동과 증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착취, 납치,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와 증인 포함, 모든 범죄의 아동 피해자와 증인 보호</li> <li>「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 관련 문제에서의 사법지침」 온전히 고려</li> <li>아동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에 관한 조치 「아동권리보장법」과 기타 모든 관련 법률에 포함</li> </ul>
	선택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권리협약 청원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li> </ul>
	국제인권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인권조약 비준 고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li> <li>「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li> </ul>
	지역기구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EAN의 ‘여성 및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 위원회’와 협력 모색</li> </ul>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항목에 걸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전문기구와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 일반과 관련, 아동권리 관련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 및 국제사회의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니세프(UNICEF), 유엔디피(UNDP)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SEAN의 ‘여성 및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위원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또는 기술협력을 모색하거나 지속할 것을 권고한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과 가정 중심의 대안적 보호 모색(UNICEF), 아동 대상 폭력 방지와 대응 강화(아동 대상 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기타 관련 유엔기구),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아동의 의약품 접근권 증진 등(OHCHR, UNICEF, WHO), 청소년 대상 HIV/AIDS 예방 위한 정보 제공(UNICEF, UNAIDS, UNFPA), 아동 영양실조 퇴치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조치(UNICEF, FAO),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방안 수립(유엔국가

팀, UNICEF, WFP), 아동의 학습·휴식·여가·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방해하는 노동 수행 요구 금지,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학교에 대한 기부 요구 효과적 금지, 교사의 학생 체벌 방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교 중퇴 방지, 성평등 증진, 학업성취도 정보 주기적 공개 등(UNICEF, UNESCO), 이해·평화·관용·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증진(UNICEF, UNESCO), 아동의 노동 동원 방지(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여러 권리 영역에서 관련된 SDG의 세부목표를 상기시킴으로써 아동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SDG를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적학대 대응 강화(SDG 16.2),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 이에 필요한 종합 대책 수립 및 교사 양성 등(SDG 4, 11),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감소와 아동 건강 증진(SDG 3.2, 3.8), 청소년을 위한 성 및 재생산 보건 정책과 교육(SDG 3.7),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아동의 영양 개선(SDG 2.1, 2.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SDG 13.5), 물·위생·영양 및 생활수준 개선(SDG 6.2), 아동의 학습·휴식·여가에 대한 권리(SDG4), 영유아 발달을 위한 양질의 보육 지원 및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SDG 4.2), 아동의 노동 동원 및 경제적 착취 방지(SDG 8.7)에 대한 권고에서 SDG 세부목표를 연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해, 북한은 2002년 최초 국가보고서<sup>7)</sup>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지연되었던 2차 보고서를 2·3·4차 통합보고서의 명목으로 2016년 4월 11일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의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2005년과 2017년 두 차례 진행하였다. 가장 최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17년 11월 8일에 있었으며, 11월 22일에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017년 북한의 국가보고서 심의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sup>8)</sup>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에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내용은 \*을 표시하였다.

7) UN Doc. CEDAW/C/PRK/1 (2002).

8) UN Doc. CEDAW/C/PRK/CO/2-4 (17 November 2017).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입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권리보장법(2010년),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출산휴가 및 수유 휴식 시간 증대를 포함하여 임신부 여성을 위한 조치를 명시한 노동보호법(2010년),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명시한 사회보장법(2008년)</li> </ul>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Committe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의 설립 등을 통해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li> </ul>
	인권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권리협약(2016년) 비준</li> <li>아동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4년) 비준</li> </ul>
이행 저해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결정한 경제제재</li> </ul>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위원회의 일반권고의 홍보 및 본 권고의 신속한 이행</li> </ul>
	입법 및 차별적 법률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전 영역에서 직·간접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의 포괄적 정의를 국내법에 채택할 것</li> <li>모든 여성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18세로 상향조정할 것</li> <li>여성권리보장법과 가족법상 배우자 간 화해에 대한 조항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서 기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li> <li>교육권, 고용·사회·노동 권리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 개정할 것</li> <li>인트라넷과 인터넷 등에 법률, 지침, 규정 공개할 것</li> <li>인트라넷과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 지침, 규정 공개할 것</li> </ul>
	이전 권고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최저혼인연령을 18세로 상향조정할 것</li> <li>여성권리보장법과 가족법의 배우자 간 화해 조항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li> <li>교육, 고용, 사회, 노동 관련 법규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 파악하고 개정하도록 법률 검토</li> <li>인트라넷과 인터넷 등에서 법률·지침·규정 공개</li> </ul>
	사법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조인 및 법학도의 협약 적용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 실시</li> </ul>
	여성 발전을 위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권리 효과적 증진 위해, National Committe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에 대한 자원 확보</li> <li>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li> <li>성평등 증진 계획 채택·이행·평가</li> <li>국가기관과 조선민주여성동맹에 여성의 권리와 협약에 대한 정책 지침 제공</li> </ul>

구분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Committee 가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해 권고한 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국가 인권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기구 설립</li> </ul>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독립적 활동 보장</li> </ul>
	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사법부, 보안, 경찰 및 지도자 및 관리자급 직책 등 여성이 과소진출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달성 위해 적극적 조치 실시</li> <li>• 고정관념에 기반한 직제분리 시정하기 위해 각 고용분야의 최소여성 비율 할당을 위한 특별조치 검토</li> </ul>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 철폐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시행하고, 각급 학교 교육에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 포함할 것</li> <li>• 교육과 미디어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대한 이해 강화</li> <li>• 전략 이행을 통한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li> </ul>
	여성에 대한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5.2를 상기하며,</li> <li>• 모든 유형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형사범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권리보장법 재검토, 여성에 대한 피해에 상응하도록 강간에 대한 양형기준 등 형법 재검토</li> <li>• 부부 및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을 성범죄에 포함하고, 비동의 상황을 고려할 것</li> <li>• 피해자의 사법구제 보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적절한 형 부과</li> <li>•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쉼터 이용 보장, 사회적 낙인 방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 방지 노력 강화</li> <li>•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사법부 및 경찰 대상 교육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 강화</li> </ul>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신매매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채택</li> <li>• 여성 인신매매와 착취의 근본 원인인 여성의 경제적 상황 개선</li> <li>• 송환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고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내지 않으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한 여성 대상 강제낙태 실시하지 않을 것</li> <li>•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li> </ul>

구분	주제	내용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직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법정 여성 할당제 등을 분명한 기한과 목표하에 채택하고 보안기관과 경찰에 여성 채용을 늘릴 것</li> <li>여성의 동등한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요건이라는 인식 제고</li> <li>여성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 지원</li> </ul>
	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여성의 무국적 자녀에 대한 국적의 소급적 부여</li> <li>당사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과 자녀가 강제송환당하지 않고 자녀가 출생 등록 및 국적 획득할 수 있도록 양자협정 검토</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향상, 교육 과정을 통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li> <li>교내 리더십 관련 여학생과 남학생의 평등한 참여 장려</li> <li>고등교육에서의 성차별 극복 노력 강화 및 여성이 소수인 학문 및 진로에 여성 참여 장려</li> <li>교육 관련 SDG 4의 이행을 위해 UNESCO 및 UNICEF와의 협력 강화</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여성에게 저임 직업을 할당하는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 재검토</li> <li>여성의 관리자급 및 지도자급 직책 참여 장려</li> <li>여성 고용 기회 개선, 여성의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남성의 은퇴 연령과 일치하도록 노동법 개정 검토</li> <li>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보와 통계 공개</li> <li>자녀출산 후 의무적 남성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공유제도 도입 등으로 남녀간 가족 및 가사 책임의 평등한 분담 장려</li> </ul>
	직장 내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채택</li> <li>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제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포함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효과적인 접근 보장</li> <li>강요된 성관계 포함 직장 내 강간에 대해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포함 여성의 영양실조 근절 노력 강화</li> <li>청소년 대상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 안전하고 저렴한 피임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접근성 증진</li> <li>교과과정에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차별적 태도를 다룰 것</li> <li>HIV/AI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HIV/AIDS 감염 여성 및 여아를 위해 무상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치료에 대한 접근 보장</li> </ul>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구분	주제	내용
	농촌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지역 여자 청소년·여성의 대학 진학 장려 및 다양한 진로에 대한 안내와 학업 상담 프로그램 제공</li> <li>• 농촌 여성의 의료,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노력 강화</li> <li>•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농촌 여성들의 인식 제고</li> </ul>
	여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여성 및 여아의 교육, 고용,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질에 주의를 기울여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li> </ul>
	여성 피구금자 및 송환된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종사자의 여성 수용자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li> <li>• 여성 수용자 대상 성폭력 및 기타 폭력 발생 시 신고절차 마련 및 효과적 수사·기소</li> <li>• 불법 월경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침습적 신체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방지,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존중 등 강제송환된 여성 수용자의 상황 개선</li> <li>• 국제기구와 유엔특별절차 등 독립적 기구들의 여성 구금시설 방문 허용</li> </ul>
	혼인 및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의 여성에 대한 영향 파악 등 이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여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 제공</li> <li>•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li> <li>• 입양 절차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 보장</li> </ul>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연령·지역별로 분리하여 자료 수집, 분석, 전파하는 체계 개발 및 시행</li> <li>• 여성의 실질적 평등 실현에 대한 진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 사용</li> </ul>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li> <li>• 위원회 회의 시기에 관한 협약 제20조 제1항 신속한 수용</li> </ul>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이행을 위해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활용</li> </ul>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li> </ul>
	기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의 개발 과정에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지원 받을 것</li> </ul>
	다른 인권조약 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 강제실종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li> </ul>
	후속조치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직장내 성희롱, 여성 피구금자 관련 권고사항(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 2년 내 제출</li> <li>• 2021년 11월까지 제5차 정기보고서 제출</li> </ul>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도 여러 항목의 권고에서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 및 지원을 모색할 것과 SDG 이행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규약 이행 일반에 대한 권고로서는, 당국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것과 SDGs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 세부 권리 영역에 대한 권고에서는 부부간 포함 모든 성폭력을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률 재검토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SDG 5.2),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SDG 4)와 관련해 SDG와의 연관성을 환기시켰다. 교육에서의 성평등 증진과 관련해 UNESCO와 UNICEF와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2016년 12월 6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2018년 12월 19일 최초 국가보고서<sup>9)</sup>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가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해 장애인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장애인 당사자들 및 단체 대표를 만나 장애인 권리 실태를 파악하였고,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만나 협약 이행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sup>10)</sup>

북한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후 의학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던 법률상의 장애자에 대한 정의를 협약상의 장애인 정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11)</sup> 북한은 장애자보호법 개정 이외에도 장애와 관련성 있는 국내법 전반을 협약상의 권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sup>12)</sup> 장애인 교정기구의 현대화, 직업훈련 증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커뮤니케이션 장벽 해소를 위한 활동 강화, 장애아동을 위한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일련의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3)</sup>

북한은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자보호법의 개정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의 요구를 충족하면

9) UN Doc. A/HRC/37/56/Add.1 (2018).

10)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5.

11) Ibid. paras.7-9.

12) UN Doc. CRPD/C/PRK/1 (2018), paras.28-29.

13) UN Doc. CPRD/C/PRK/1 (2018), para.30.

서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외에도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권고나 장애인권리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sup>14)</sup> 나아가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협력 조항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 장애인권리 관련 국제기구, NGOs, 외국정부들과의 국제협력의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을 호소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과 지원의 확장을 통해 북한 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 중 북한이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수용 태도를 밝힌 사항은 국제인권조약 준수 및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 등 미비준 주요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입법 및 조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인도주의 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모니터링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이산가족 상봉,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등이다. 또한, 최근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보고절차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소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권고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와 북한을 방문했던 장애인특별보고관은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구하고 지속해 나갈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준수와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집단 인권 보호, 국가인권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 시작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등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전략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직접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의 관련 대북협력에 대한 지

14) Ibid., paras. 7-9, 27-29.

15) Ibid., paras. 199-206.

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북한과 경제적·인도적 협력을 진행할 때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하여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 2. SDGs와 북한인권

덴마크인권연구소의 SDGs와 국제인권기준의 연계 연구를 참조하면, SDGs의 169개 세부 목표 중 92%가 인권과 관련이 있다<sup>16)</sup>는 점을 알 수 있다.

덴마크인권연구소의 SDGs 목표와 유엔 주요 인권기준 연계

목표	세부목표	유엔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1. 빈곤퇴치	1.1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1.2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1.3	UDH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1.4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5	UDHR, ICCPR, ICESCR, CRPD, ICRMW
	1.a	ICESCR, CRC, CRPD
	1.b	UDH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2. 기아 종식	2.1	ICESCR, CRC, CRPD
	2.2	ICESCR, CRC, CEDAW, CRPD
	2.3	ICESCR
	2.4	ICESCR
	2.a	ICESCR
	2.b	ICESCR
	2.c	ICESCR
3. 건강과 웰빙	3.1	UDHR, ICCPR, ICESCR, CEDAW, CRPD, ICRMW
	3.2	UDHR, ICCPR, ICESCR, CRC, CRPD, ICRMW
	3.3	UDHR, ICCPR, CRC, CRPD, ICRMW
	3.4	UDHR, ICCPR, ICESCR, CRC, CRPD, ICRMW
	3.5	ICESCR, CRC,
	3.6	UDHR, ICCPR, CRPD, ICRMW

16)

목표	세부목표	유엔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3. 건강과 웰빙	3.7	UDHR, ICESCR, CRC, CEDAW, CRPD
	3.8	UDHR, ICESCR, CRC, CRPD, ICRMW
	3.9	UDHR, ICCPR, ICESCR, CRPD, ICRMW
	3.a	ICESCR
	3.b	UDHR, ICESCR,
	3.c	ICESCR, CRC, CRPD
	3.d	UDHR, ICCPR, ICESCR, CRPD, ICRMW
4. 양질의 교육	4.1	UDH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4.2	UDH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4.3	UDH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4.4	UDH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4.5	UDH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4.6	UDHR, ICESCR, CEDAW, CRPD
	4.7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4.a	ICESCR, CRPD
	4.b	ICESCR, CRC, CEDAW,
	4.c	ICESCR, CRPD
5. 성평등	5.1	UDHR, ICCPR, ICESCR, CEDAW
	5.2	UDHR, ICCPR, ICESCR, CRC, CRPD, ICRMW
	5.3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5.4	ICESCR, CEDAW
	5.5	UDHR, ICCPR, ICESCR, ICERD, CEDAW
	5.6	ICCP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5.a	UDHR, ICESCR, ICERD, CEDAW
	5.b	UDHR, ICCPR, ICESCR, CEDAW, CRPD,
	5.c	ICESCR, CEDAW
6. 물과 위생	6.1	UDHR, ICESCR, CRC, CEDAW, CRPD
	6.2	UDHR, ICESCR, CRC, CEDAW, CRPD
	6.3	ICESCR
	6.4	UDHR, ICESCR, CRC, CEDAW, CRPD
	6.5	UDHR, ICESCR, CRC, CEDAW, CRPD
	6.a	UDHR, ICESCR, CRC, CRPD
	6.b	ICCPR
7. 지속가능한 에너지	7.1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7.a	UDHR, ICESCR,
	7.b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목표	세부목표	유엔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1	CEDAW
	8.2	UDHR, ICESCR
	8.3	CEDAW
	8.4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8.5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ICRMW
	8.6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ICRMW
	8.7	UDHR, ICCPR, ICESCR, CRC, CEDAW, CRPD, ICRMW
	8.8	UDHR, ICESCR, CEDAW, CRPD, ICRMW
	8.a	UDHR, ICESCR,
	8.b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9. 산업화 증진과 혁신, 사회기반시설 구축	9.1	UDHR, ICESCR, CEDAW, CRPD
	9.3	CEDAW
	9.4	UDHR, ICESCR
	9.5	UDHR, ICESCR, CRC
	9.a	UDHR, ICESCR, CRC, CRPD
	9.b	UDHR, ICESCR, CRPD
	9.c	UDHR, ICCPR, ICESCR, CEDAW, CRPD,
10. 불평등 완화	10.1	UDHR, ICCPR, ICESCR, CRC, CERD, CEDAW, CRPD, ICRMW
	10.2	UDHR, ICCPR, ICESCR, CRC, CERD, CEDAW, CRPD, ICRMW
	10.3	UDHR, ICCPR, ICESCR, CRC, CERD, CEDAW, CRPD, ICRMW
	10.4	UDH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0.5	UDHR, ICCPR, ICESCR
	10.6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0.7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0.a	UDHR, ICESCR
	10.b	UDHR, ICESCR
	10.c	ICRMW

목표	세부목표	유엔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1	UDHR, ICESCR, ICERD, CEDAW, CRPD, ICRMW
	11.2	ICESCR, CEDAW, CRPD,
	11.3	UDHR, ICCPR, ICESRD, CRC, CEDAW, CRPD, ICRMW
	11.4	ICESCR
	11.5	UDHR, ICCPR, ICESCR, CRC, CRPD, ICRMW
	11.6	ICESCR
	11.7	CRC, CEDAW, CRPD
	11.b	ICESCR
	11.c	ICESCR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2	ICCPR, ICESCR,
	12.3	ICESCR,
	12.4	ICESCR,
	12.5	ICESCR,
	12.8	UDHR, ICCPR, ICESCR, CEDAW, CRPD,
	12.a	UDHR, ICESCR
	12.c	ICESCR
13. 기후변화 대응	13.1	UDHR, ICCPR, ICESCR, CRC, CRPD, ICRMW
	13.3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3.a	ICESCR
	13.b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4. 해양 생태계	14.1	ICESCR
	14.2	ICCPR, ICESCR
	14.3	ICESCR
	14.4	ICESCR
	14.6	ICCPR, ICESCR
	14.7	ICCPR, ICESCR
	14.a	ICESCR
	14.b	ICESCR, ICERD, CRC, CEDAW
	14.c	ICCPR, ICESCR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목표	세부목표	유엔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15. 육상 생태계	15.1	ICCPR, ICESCR
	15.2	ICCPR, ICESCR
	15.3	ICCPR, ICESCR
	15.4	ICCPR, ICESCR
	15.5	ICCPR, ICESCR
	15.6	ICESCR,
	15.a	UDHR, ICESCR
	15.b	UDHR, ICESCR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UDHR, ICCPR, ICERD, CRC, CRPD, CAT, ICRMW
	16.2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CAT, ICRMW
	16.3	UDHR, ICCPR, ICERD, CRC, CEDAW, CRPD
	16.5	ICESCR
	16.6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16.7	UDHR, ICCP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6.8	UDHR, ICCPR, ICESCR
	16.9	UDHR, ICCPR, ICERD, CRC, CEDAW, CRPD
	16.10	UDHR, ICCPR, ICERD, CRC, CRPD, CAT, ICRMW
	16.a	ICCPR, ICESCR
	16.b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7.1	ICCPR, ICESCR
	17.2	UDHR, ICESCR
	17.3	UDHR, ICESCR
	17.4	UDHR, ICESCR
	17.5	UDHR, ICCPR, ICESCR
	17.6	UDHR, ICCPR, ICESCR, CRPD
	17.7	UDHR, ICESCR, CRC, CRPD
	17.8	UDHR, ICCPR, ICESCR, CEDAW, CRPD
	17.9	UDHR, ICCPR, ICESCR
	17.10	UDHR, ICCPR, ICESCR
	17.11	UDHR, ICCPR, ICESCR
	17.12	UDHR, ICCPR, ICESCR
	17.13	UDHR, ICCPR, ICESCR
	17.15	ICCPR, ICESCR

목표	세부목표	유엔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7.16	UDHR, ICESCR
	17.18	UDHR, ICCPR, ICESCR, ICERD, CRC, CEDAW, CRPD, ICRMW
	17.19	ICCPR, ICESCR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DGs 바탕으로 윤지영 재구성

북한 정부는 2016년 9월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북한-유엔 전략 계획)”에 합의했다.

본 전략계획은 북한 외무성과 과 유엔전략계획 운영위원회의 주도로 입안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북한 내에서 진행될 유엔의 활동에 대한 합의사항들을 담고 있다. 유엔은 전략계획의 목표를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북지원사업의 본질을 “단순한 물자지원이 아닌 국제적인 원칙과 가치, 표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략계획 수립의 근간이 된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략계획 문서는 전략의 틀을 담고 있을 뿐 개별사업을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평가와 모니터링의 실현 가능성 역시 담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유엔과 북한 정부 간의 협력에 있어 북한 정부의 주도성(leadership and ownership)을 존중하는 것이 유엔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셋째, 유엔의 활동은 자원 전달이 아닌 기술과 지식, 그간의 경험 전달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국가개발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넷째, 전략계획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개발과 인도적 접근을 동시에 취한다. 다섯째, 여러 분야에 걸쳐 통합적 접근을 취한다.

이 일반원칙에 따라 수립된 북한-유엔 전략계획은 주민들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고함으로써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 개발역량 강

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법(cross-cutting approaches)에 근거하여 식량 및 영양안보(Food & Nutrition Security),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s),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데이터와 개발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의 네 가지를 전략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식량 및 영양 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식량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며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s)는 교육, 보건, 물과 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 4번, 6번에 해당한다.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은 유엔의 대북사업의 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대응, 재난 위기 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7번, 11번, 12번, 13번, 15번에 해당한다. 데이터와 개발 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는 유엔이 대북사업을 공개되고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의 세가지 전략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역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은 북한 정부의 요청 및 사업 진행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또 지원할 계획이다.

유엔의 통합적 접근법은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적인 인간 개발(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라고 요약될 수 있다. 해당 접근법은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북한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고, 둘째,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취하며, 셋째,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를 지원하고, 넷째,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섯째, 북한 주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여섯째, 성과 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등의 사업원칙을 아우른다.

북한은 2016년 5월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6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

5개년 전략이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sup>17)</sup> 북한은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1개의 지표로 구성된 SDGs를 현지화하여 17개 목표, 89 세부목표, 130개의 지표로 구성된 북한 버전의 SDGs를 수립하였다. 북한의 SDGs 이행전략은 SDGs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분야별 계획에 통합하는 것으로 SDGs 2, 6, 7, 15를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SDGs 이행에는 국가조정위원회와 외무성, 중앙통계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합의된 북한-유엔 전략계획 2017-2022에 따른 SDGs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SDG 2번과 9번 목표와 연계되는 “식량과 영양안보”의 경우, 북한은 지속적인 농업생산량 감소와 자연재해로 인해 전체 주민의 약 92%가 만성적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있고 약 40%가 긴급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2019년 기준 북한 내 식량안보 취약인구 비율이 2013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다.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1.5%가 공공배급시스템을 통해 식량을 보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1월 기준 1인당 배급량이 2018년 380g에서 300g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은 인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1,2차 UPR을 통해 식량권 개선 조치에 대한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또한 3차 UPR을 통해서도 건강과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에 대한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식량과 영양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국제사회의 대규모 단기 긴급 지원과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SDGs 3번, 4번, 6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개발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안

17) UN Doc. A/71/PV/17 <https://undocs.org/en/A/71/PV.17> pp.47-50

정적인 의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에 보건관련 시설과 식수를 포함한 위생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크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속에서 2019년 기준, 5세 미만 아동인구 620만명 중에 45만명에서 필수약품이 처방되었고 모성사망비 역시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도 있지만 결핵이나 말라리아, 간염등의 유병률이 매우 높으며 만성질환 사망률은 84%에 달한다.

또한 북한 인구의 60.9%만이 위생적인 식수에 접근할 수 있고 이마저도 농촌의 경우에는 54%로 그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보건과 위생 인프라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사회 전반의 보건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하지 못한 교육 및 노동환경 속에서 교육권과 노동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1,2,3차 UPR을 통해 북한에 권고한 보건한 내용인 교육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조 항목을 북한이 수용하였다는 것과 북한-유엔 전략계획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건의료 영역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단기 보건의료 전략 보고서를 두 차례나 발간하는 등 사회개발서비스 영역의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명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SDGs 7번, 11번, 12번, 13번, 15번과 연계되는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경우,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에너지수급 차질에 시달리고 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매년 44%씩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수력발전이나 석탄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그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며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은 여러모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은 북한-유엔전략계획을 통해 영아, 임산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등을 포함하는 취약집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성사망비를 낮추는 것, 여성과 소녀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과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사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취약집단들이 겪어오고 있는 인권침해의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SDGs 이행과 관련한 북한 내 취약집단의 인권증진의 초점은 생존권과 건강권에 맞추어져 있어 아동, 여성,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각각 북한에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경우,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014년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와 의무교육 확대 등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 보장, 고문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등에 대한 북한 사회의 이행 관련 데이터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8년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명시한 사회보장법,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과 출산휴가 및 수유 휴식 시간 증대 등 임산부 여성을 위한 조치들을 명시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 인권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성과가 있었으나 여성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인 법조항의 개정이 지연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인신매매 등 성매매 착취에 대한 권고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증대 등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의 경우, 북한이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장애인 권리와 관련한 정보들이 국제사회와 공유될 수 있었다. 북한은 장애와 관련한 국내법을 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권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은 북한 역시 자국의 인권 증진 사례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제기구들과 꾸준한 협력을 해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범주가 사회권 영역에 한정된다는 한계와 유엔의 아동, 여성 권리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북한 사회의 취약집단 인권 증진을 저해하는 요소인 대북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 북한인권 증진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표〉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그에 해당하는 SDGs 및 북한 인권 현황 정리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		북한 성과목표	연계 SDGs	국제인권기준	UPR 권고사항	북한 현황	
1	식량 및 영양 안보	1.1 농업, 임업,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영양, 식품의 지속가능성 제고	SDG 2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HDR art.25; ICESCR art.11; CRC art.27), 사회보장권 (UDHR art.22; ICESCR art.9; CRPD art.28; CRC art.26),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CEDAW arts.11,13,14(2)(g),15(2),16(1))	• 영아, 임산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증진	• 2019년 기준, 북한 식량인보 취약인구 비율 2013년 대비 약 12% 증가, 전체 주민의 92%가 만성적 식량부족, • 북한인구의 40%가 긴급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함.	
		1.2 모든 가족이 언제나 충분한 식품과 영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을 제고	SDG 9				
2	교육 서비스	1.3. 게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SDG 3	생명과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UHDR art.3; ICPR art. 6),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HDR art. 25; ICESCR art.12), 교육을 받을 권리(UHDR art.26; ICESCR art.13), 노동에 의하여 성체를 영위할 권리(ICESCR art. 6)	• 식량권 및 교육관련 개선조치	• 2019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인구 620만명 중 45만명에 필수약품 처방.	
		2.1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의 개선 및 일반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SDG 4			•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정보분와 국제기구 협력	• 모상사망비는 1990년대 10만명당 120명, 2017년 기준 89명에 도달, 2020년까지 10만명당 45명 목표
		2.2 견련, 비견련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 유아결핵에 대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 제공	SDG 6				• 만성질환 사망률 84%, 결핵 고위험 국가, 응급치료 제한적
		2.3 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SDG 7				• 북한인구의 60.9%만이 위생적인 식수에 접근 가능, 북한 전체 가구의 약 36%가 오염된 식수 음수, (송촌지역은 54%)
		2.4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 위생시설 보급	SDG 11				• 2015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공급량의 36%, 연평균 약 4.4%씩 감소.
2.5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	SDG 12				• 북한은 UN 전략계획 전반에 인권기반 접근(HRBA)과 성과기반관리(RBM)를 도입하기로 함.		
3	외부타당성 & 지속가능성	3.1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	SDG 13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HDR art. 25; ICESCR art.1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UHDR art.25; ICESCR art.15; ICERD arts.5,7; CRPD art.30; CRC art.31),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PD art.11), 장애인의 이동권보장(CRPD art.9(1); CRC art.23; CEDAW art. 14(2)),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CCPR, ICESCR art.1(2))	•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 2020년까지 10만명당 45명 목표	
		3.2 지역 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처우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적 에너지원에의 접근	SDG 15			• 표현의 자유 보장	
		3.3 환경권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기관들의 통합적이고 동등한 사업수행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치	
4	데이터와 개발 관리	4.1 사업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인도 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 제고			(*) 1.2.3차 권고사항 중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 관련 권고사항)		
		4.2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4.3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지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					

〈표〉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그에 해당하는 SDGs 및 취약계층 별 북한 인권 현황 정리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		취약계층 관련 북한 성과목표	연계 SDGs	취약계층	국제인권기준	UNPR 특별절차 조약기구 북한 관련 권고사항	북한 현황
1	식량 및 영양 안보	1.2 모든 개체가 연례는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 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을 제고	SDG 2	여성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CEDAW arts.11, 13, 14(2), 15(2), 16(1)), 여성의 생존권과 건강권(CEDAW art.12), 여성과 소녀의 교육권(CEDAW art.10), 차별 받지 않을 권리(CEDAW arts 1-5),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종식(CEDAW art.1-6, DEVAW arts. 1-4; CRC arts. 24(3), 35), 동일한 고용의 권리(CEDAW art.11; ILO Conventions No.100 & No.111), 금융 신용에 대한 동일한 권리보장(CEDAW art. 13(6)), 농촌여성의 인트라 접근성 보장(CEDAW art.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동등한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보장</li> <li>고등교육에서의 성차별 극복 노력 강화, 여성이 소수인 학문 및 진로에 여성 참여 장려</li> <li>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사법부 및 경찰청상 역량 강화</li> <li>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 및 저임금임 할당하는 노동관련 법률과 정책 재검토</li> <li>농촌 여성의 의료,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권리 보장법(2010년)</li> <li>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명시한 사회보장법(2008년)</li> </ul>
		1.3. 가입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SDG 9		아동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CRC art.6, 24, CRC ICESCR art.21(1)(art.4)), 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CRC arts.23(4), 28(3)), 아동노동금지(CRC art.32; ILO Convention No.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 및 아동, 서양의 근본 원인이 사회, 경제적 부패와 불평등, 발육부진과 저체중을 야기하는 아동 영양실조, 고된 신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아동의 건강할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 노동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강화</li> <li>ILO 협약 제182호와 제138호 기준을 위해 ILO가 인고려 및 기술지원 모색</li> </ul>
2	사회 개발 서비스	2.1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위안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의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으로 서비스 보장	SDG 3 SDG 4	여성, 임산부	모성보호(CESCR art.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실행계획에 대한 독립적 검토</li> <li>임신 및 수유중인 여성들의 영양실조 근절 노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및 모성사망 감소와 관련한 의무교육 이행</li> <li>출산율과 및 수유 후시 증대를 포함하여 임산부 여성을 위한 조치를 명시한 노동보호법(2010년)</li> </ul>
		2.2 전염, 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 유아결핵에 대한 개선훈련 의료 서비스 제공	SDG 6		장액인의 교육적 접근 보장(CRC art.23(3), CRPD art.24, art. 32), 장애인에 이동권 보장(CRPD art.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사회보장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포괄적 이행 촉구,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주류화</li> <li>장애여성 및 어의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 제고, 정보소접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권리 협약(2016년)비준</li> </ul>
3	회복 탄력성 & 지속 가능성	3.1 재난 및 기후변화와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	SDG 7 SDG 11	여성, 임산부			
		3.2 지역 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자립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의 접근	SDG 12 SDG 13 SDG 15	장애인			

## 4. 제언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를 통해 살펴본 SDGs 이행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은 주로 생존권과 건강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첫째,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인권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둘째,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유권보다는 사회권 중심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SDGs는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이며 UN의 모든 활동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SDGs는 출발부터 인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행의 과정은 인권을 증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SDGs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인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그룹의 인권 증진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정치적으로 이해되는 시민권 차원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여성, 아동, 장애인과 관련한 국제규약에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절차를 이행하지만 유엔의 북한인권조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에는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정부에게는 인권이라는 키워드 역시 양가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가 시급하지만 그에 대한 요구는 비핵화 문제로 직결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 국제사회는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SDGs는 크게 구분한다면 1번부터 15번까지 사회권 규약과 넓은 연계면을 가지고 16번이 자유권 규약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인권의 문제를 자유권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권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다룬다면 이는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SDGs는 북한이 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권 중심의 논의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양가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사회권 중심으로 접근하여 북한 정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의 기회를 유보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해 인권기반접근(RBA)을 채택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이 때의 인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DGs를 통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과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북한의 관심이 교차하는 지점을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있다.

제 3차 UPR에서 북한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관련 권고사항들을 수용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은 관련 법규와 사업 이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변화를 넘어서 북한인권 상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권고 사항에 대한 선별적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식량과 영양안보 상황 및 보건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꾸준한 국제사회의 촉진과 압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여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 총회가 채택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약칭 “평화의 지속”, 2018)]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의 취지를 집약한 지향성이 “평화의 지속”이며, 지속적인 평화 없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대응으로서 지역 행위자 중심성, 인도적 지원과 개발 및 여성자력화를 평화구축 및 정치적 과정과 통합할 필요성, 관련 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을 축으로 하는 발전과 거버넌스 및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평화구축을 취약지역 접근전략의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발전과 거버넌스 형성과 평화구축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국내적 협력정책 논의는 공공외교와 인권외교와도 접속되고 있다. 인권외교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타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교는 정부간 외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외교의 일환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정부, 정부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시민 행위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관간, 부처간 협력 정책에도 인권외교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외교의 확대가 인권외교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기초로서, (1)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실질적 인권개선, (2) 종합적 다층적 입체적 개선 전략, (3) 글로벌-지역 상황 및 위기의 맥락을 반영한 접근, 4) 지속가능발전과 평화유지, 개발협력과 연동하는 통합적 접근, (5) 대화와 이해 및 협력의 선순환을 최대화하는 접근, (6) 단계적 전략적 장기적 접근, (7) 일관된 탄력성을 갖춘 정책과 프로그램의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보편적 인권 기준의 적용과 확대를 위한 협력적 접근도 기존의 북한 인권 검토에서 제기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제적 국내적 협력적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민간협의기구 설립, 북한 인권 관심 정부들과 민간협의기구 협력 및 협의, 확대 강화된 인권외교 프로그램, 북한의 인권역량과 조사 통계 역량을 위한 간접적 지원과 협력, OHCHR과 북한의 인권기술협력 촉진 및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인도적 지원 분야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대화와 설득, SDGs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과 기술협력프로그램, SDGs 접근과 사회권의 중요성과 인권증진 효과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대북 개발지원 및 인권개선 관련 국제시민사회와 정보교류와 지원, 지속가능 농업과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북한의 UPR 권고 수용/유의 입장 요소들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협력, 국제식량/보건기구(WFP/FAO, WHO)의 대북사업 협력, 북한의 국제기구 협력 역량강화 사업 간접 지원, 북한 인권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간접적 연수/교육/공동사업 등 기술협력, 대북 협력 경제, 식량, 보건, 개발 관련 전문기구들에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 제고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 Session 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코로나19 이후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Ji-eun Kim (ALCOM, Korean Medical Doctor)

김지은 (대한여한의학사회 홍보이사, 한의사)



## Measures to Promote North Koreans' Right to Health and Medical-Related Human Rights Post-COVID-19

Kim Ji-eun, former North  
Korean pediatrician

Human Rights = Fundamental  
Human Rights = Right to Health

“Help!”

## Article 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Definition of human rights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Help!”

## Now: The Era of Health Security

- ☞ Concept of health
- ☞ Our attitude toward North Koreans' human rights and right to health
- ☞ Article 2 of the UDHR: Definition of human rights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Medical System

Community (ho) doctors in charge – Family Doctor System

Home visit health-care service

Combination of Western–Eastern medicine (prescription of intravenous injections, antibiotics, and morphine allowed)

Weekly doctors' council meetings

## Community (ho) Doctors in Charge System

1. Doctors in charge of the community (ho)
2. Doctors in charge of employees
  - \* Patient examination and management
  - \* Quarantine project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 Promotion of sanitation for disease prevention
  - \* Management of community environmental sanitation
  - \* Explanation of central policies



## Measures to Promote North Koreans' Right to Health and Medical-Related Human Rights

Inter-Korea Joint Response Institutionalizing the Medical Center for Inter-Korea Cooperation

### Disease Control Team

Controls infectious, communicable, and other diseases

### Academic Research Team

Conducts joint research, forums, and academic seminars

### Traditional Medicine Cooperation Team

Administers new natural drugs, clinical trials, and experiences of Korean Medic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s verification system

### Nobel Prize in Medicine

"An answer to be found in unification medicine"

## Measures to Promote North Koreans' Right to Health and Medical-Related Human Rights

### DMZ Joint Hospital

Improves the skills of medical professionals, practices the latest information, and promotes the exchange of medical culture and other communions

### Building of a Dictionary of Medical Terms

Prepares for health-care integration, including communication and communion

### Sanitary Pad Factory: Kaesong

Provides labor, jobs, and investment in women, children's health, and the future

### Organization and study of medical laws, regulations, and systems: Preparing the foothold for medical integration and joint health care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quired.

## Measures to Promote North Koreans' Right to Health and Medical-Related Human Rights

DPRK's caus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tribution

Full utilization of the DPRK's health-care system and personnel

Acti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PRK's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production facilities

Discrimination between politics and humanitarian perspectives

# 코로나19 이후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전 북한 소아과 의사 : 김 지 은

인권 = 기본권 = 건강(권)



## 세계인권선언 제 2조 (인권의 정의)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외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 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으로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사람 살려 "

## 지금은 건강안보의 시대

- ☞ 건강의 개념
- ☞ 북한주민의 인권, 건강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 세계인권선언 제2조 - 인권의 정의

## 북한의 진료 시스템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제)-주치의제도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양, 한방 결합 (정맥주사,항생제 및 모르핀처방 가능)

주 1회 의사 협의회

## 의사담당구역제

### 1. 거주지 담당제(호담당구역제)

### 2. 직장담당제

- \* 환자 진찰 및 관리
- \* 방역사업(전염병역학조사 및 관리)
- \* 각종 질병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전
- \* 마을 환경위생관리
- \*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해설



##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 남북 공동대응 - 남북보건의료협력센터-제도화

#### 질병관리팀

전염병관리, 감염병관리, 기타질환관리 등

#### 학술연구팀

공동연구, 포럼, 학술세미나 등

#### 전통의학협력팀

전연물신약, 고려의학의 임상실험과 경험 및 한국의 검증 시스템

#### 노벨의학상

"통일의학에 답이 있다"

##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 DMZ 공동병원

의료인들의 실력 향상, 최신정보 실습, 의료문화 교류, 기타 교감

### 의학용어사전 만들기

소통과 교감을 비롯한 보건의료통합을 위한 준비

### 생리대생산공장 - 개성

노동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여성과 소아건강 및 미래에 대한 투자

### 의료법제, 법규 정리 및 연구로 - 의료통합, 공동의료의 기초마련

미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

##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분야 인권증진 방안

북한의 명분-국제사회의 일원, 기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적극 활용

북한의 제약시설, 의료기자재 생산 시설 활성화 및 활용

정치와 인도관점의 차별

## Session 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Debater / 토론문



Sung-Yul Park (Visiting Professor at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박성열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 Discussion on “Cooperative Measur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Era of COVID-19”

Professor Sung-Yul Park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Being in agreement with what we have heard today on the issue of North Korea’s actions in dealing with COVID-19 epidemic, and likewise, of the proposed pla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human rights promotion in North Korea, I would like to add a few words in this regard, by calling attention to some of the conceived difficulties we may encounter in trying to implement such cooperation plans. I would like to do this by dividing the issue into three areas, according to the viewpoints of the parties involved, that of North Korea, tha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of South Korea.

### 1. North Korea's position

First, it is important that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on the lives of the people is assessed accurately.

In truth, North Korea is in three-fold distress; it is suffering from the ongoing international sanctions, the aftereffects of the flood of August 2020, and now COVID-19. It is the fact that, as evidenced by economic indicators, including the trade balance figures of the year, its economic situation is deteriorating. But we must look beyond the economic indicators. Unlike the situations during the “Arduous March,” in the mid-1990s, there is little indicat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are dying of starvation, or that (its healthcare system, distribution system, and other) aspects of social

infrastructure are seriously tested. Rather, the regime's response at the onset of the outbreak seems more than adequate, in terms of stabiliz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as seen by its immediate closure of the Chinese border, and also the decision to make prevention of epidemics the state's top priority.

In an interview, a North Korean defector and former trading executive stated that, despite the blockade, they were able to smuggle essential supplies into the country by way of cash exchange, in order to avoid sanctions. In addition, barter trade is widespread in North Korea, through which foodstuff and other essential items are available to its citizens, and thus, we may say that the country's living condition is not at its worst.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State, during the fight against Japanese, the North Korean communists have adapted the motto "Hard Struggle" to describe their own conditions, which was to be followed decades later by another motto "Arduous March," then again by the current "Self-Rehabilitation." For outside observers, normal operation of a state in these conditions seems nearly impossible, and yet, the fact remain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over all these years, been able to maintain social infrastructure and social orders.

In view of this, we must take a close look at how North Korea's reactions to the talks of external support have been trending in recent years. Despite the internal difficulties, Kim Jong-Un's regime has taken a negative view of the issue of external support. In particular, it firmly rejects South Korea's offers of support and cooperation.

Source	Content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speech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2019.4.13.)	"South Korea should not be playing the role of meddlesome mediator, facilitator, but must become a directly involved party that defends the good of the people as a member of the race."
The 5th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2019.12.28.-31)	"For the final victory of the Revolution and for the wellbeing of our great people, our Party once again has decided to engage in the unending struggle."
Yong-chol Kim, Vice Chairman of the WPK, Kim Yo-jong, First vice directo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2020.6.4.-6.8)	"...the work towards the South should thoroughly turn into the one against an enemy, and all communications with South will be cut off" Demolition of the Kaesong Inter-Korean Joint Liason Office (2020.6.16.)
Chairman Kim Jong-un at the 16th Political Assembly of the 7th WPK Central Committee (2020.8.13.)	"Don't allow any external support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large flood."
Rodong Sinmun (2020.9.19.)	"We condemn even the slightest sign of hope for easing the political situation or for the outside aid, and raise the banner of self-reliance and self-prosperity even higher"
Rodong Sinmun, Joint editorial for workers (2020.10.3.)	"No matter how important peace and prosperity are, we will never beg." "Our people has long endured the harsh and cruel sanctions, and the blockade, and in the process has become stronger and stronger."

This attitude can be analyzed in two ways. First,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occasioned a willing commitment to the idea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on South Korea's urging, North Korea agreed to take part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owever, ended without achieving tangible results, as the Hanoi talks broke down in February of

2019.

Since then, North Korea's position has been to be persistent in protesting against US's decision to keep strict sanctions in place, and in applying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ping to lessen the impact of the sanctions.

Second, North Korea's position may reflect its refusal of the very idea of international support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been attempting to replace several of the South Korean-led support projects with scheme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states of equal stature. Its current reluctance may be another of such instances. Under Kim Jong-Un, North Korea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normalized socialist state (i.e., the party state system has been consolidated), and it appears that the regime is intent on reinventing the inter-Korean relation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two coequal nations, and not in terms of internal affairs of a common ethnic group.

That South Korea's actions are motivated by the sentiment of ethnic oneness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clear to all, and yet, unlike in the past,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refuses to see South Korea's support of North Korea as an act of charitable kindness. A series of recent directives from Kim Jong-Un, a directive to remove tourist facilities on Mt. Geumgang built by South Koreans (October, 2019), to reject the donation of South Korean rice through UN's World Food Programme (July, 2019), to reject all forms of external support (August, 2020), and his most recent declaration that "no matter how important peace and prosperity may be, we will never beg," all these can be interpreted as an expression of his will to reevaluate the nature of the cooperation projects, which thus far has been init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position thus understood, it follows that those proposals now on the table, namely, cooperation projects concern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ust be prepared in a mutual fashion such that the positions and demand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be reflected, and should not be an act of unidirectional alms-giving in nature.

## 2.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upport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North Korea are influenced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related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the resolution entailing 13 items of sanction in rela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development, and its implementation is currently monitored by the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formulated its own measures, including the "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to limit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in North Korea, and in particular, a secondary boycott measure (secondary sanctions or third party sanctions measure), intended to dis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from dealing with and supporting North Korea.

An executive of a private organization who deals with North Korea has stated that aid to North Korea has, in all practical purposes, dried up, saying that, even if an exemption is granted by the UN, allowing goods to be moved to North Korea through China,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ust still

be mindful of being penalized by the US government for violating its rules, when it becomes necessary that the payment be converted into dollars.

Indeed, those who attempt to supply goods to North Korea will encounter numerous situations in which the articles of the sanctions may be violated, not only in relation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means of transportation, but also by collaborating with, willingly or unwillingly, certain institutions and persons in North Korea that are listed as banned by the sanctions.

In the end, the human rights cooperation project is also subject to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resolution. The project may require an exemption status to be granted. And it must not violate US rules and regulations (especially the secondary boycott provisions). And in the end, it is important for us, first, to obtain consensus on human rights support to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 particular, to know the exact stance of the new US government, whether it wishes to improve US-North Korea relations, or not, awaiting its inauguration.

### 3. South Korea's position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is committed to the advancement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n the reinstatement of the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that have been interrupted in recent years. Nevertheless, faced with North Korea's non-cooperation as well as the constraint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as we have just discussed, there are dissenting voices. This makes policy-making more difficult with regard to promoting cooperation with, and sending support to, North Korea, even when the plan involves human rights concerns.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in South Korea do not see eye to eye on the issue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e former is deeply suspicious of the current policy, though they do acknowledge the need for humanitarian aids, and claims that the support provided by South Korea will eventually be used to facilitat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the progressive accepts the coexistence of two Koreas, preferring peace and future unification, and is supportive of the idea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public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also divided in this time of COVID-19 crisis. While North Korea's long-term closure of its borders, and its refusal to cooperate with the outside, are generally seen as negative, there is also a sense of solidarity among the public, in that it recognizes the nature of the infection and the necessity for cooperation in dealing with the disease. In addition, sympathies for North Korea's backward medical conditions are being expressed.

For sustained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includ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human rights, continuous popular support is indispensable. Rather than limiting the scope of interaction to the states (accompanied by a "bipartisan" declaration of support), we must create a national atmosphere in which a wide range of people, local governing bod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alike can take part in mutual interchange of ideas and people, culminating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ultural exchange.

#### 4.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North Korean Projec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North Korean cooperation projects is increasing; there i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re is North Korean

government. Several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and there are a number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not to mention various international communities, e.g., UN organizations, NGOs, etc. The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the project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ex.

In the long term, it is desirable that the balance of involvement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shift from the state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but at the moment,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re struggling just to understand the wordings of the UN and the US sanctions, even when they are more than willing to pitch in and help. And even if they knew how to help the cooperation projects on paper, they would not know how not to incur punishment on the field while helping them. They might simply end up wasting the whole budget on a North Korean broker. In this context, a desirable governance is “a system in which each acting body is allowed to develop a fair and effective plan of action according to its expertise and endowed with autonomy to organize an efficient network of collaborators.” And for this to happen, we must be able to normalize, and afterwards monitor,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e can think of this style of administration as “meta-governance.” Meta-governance is a means with which to “give an emphasis to the ‘steering’ and ‘coordinating’ aspect of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and to rely less on the traditional ‘regulating’ of the peripheral ‘governance.’” What this means, in terms of North Korean projects,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must be able to execute the function of meta-governance.

Strategic resources available to a central government are national budget, information, state organization, and capabilities to resolve conflicts. These resources will be availabl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f an occasion is called for whether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such as the UN, or by North Korea, or by various local acting bodies.

## 5.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o promote human rights

### — a two-stage process

The urgent issues: Issues directly concerning basic human rights, e.g., food shortage, welfare of vulnerable sectors including infants and pregnant women, are universal and inalienable, and therefore, must be dealt with through multi-national cooperation, where South Korea refrains from playing a prominent role, but rather, follows the leadershi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rks together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mid- and long-term projects: Creating a safe and prosperous environment for North Korean citizens is integral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t is desirable that this goal is achieved through a series of inter-Korean projects in the area of hospital constructi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forestry, and others, all of which must be carefully planned and executed through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END

# ‘코로나-19 시대 북한인권 증진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

박성열 교수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코로나 19 이후 북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 내용에 동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해 행위 주체인 북한, 국제사회, 남한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함.

## 1. 북한의 입장

먼저 코로나-19가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사실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홍수 피해 후유증-코로나19라는 3중고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무역 수지 등 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경제지표 이면을 볼 필요가 있음. 과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처럼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체제 동요가 심각하다든지 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국경을 조기 봉쇄하고 방역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다든지 하여 체제 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면이 있음. 북한의 무역 간부 출신 탈북민을 인터뷰해보면, 북한의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필요한 물자들이 제재를 피해 현찰로 밀무역을 통해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이 긴급한 식량 등 생필품을 교환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최악인 상황은 아님. 북한은 국가 수립 이전 항일투쟁 당시부터 ‘간고한 투쟁’을 내세우고 이를 ‘고난의 행군’, 현재의 ‘자력갱생’으로 이어오고 있음. 외부의 시각에서 북한을 국가로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정상적이지만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연계하여 외부 지원에 대한 북한의 입장 추이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음. 북한 김정은체제는 내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한의 대북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음.

출처	남북교류와 협력 관련 내용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19.4.13.)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당 제7차 대회 5차전원회의 (2019.12.28.-31)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2020.6.4.-6.8)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북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해버릴 것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시 김정은 위원장(2020.8.13.)	“큰 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
노동신문 (2020.9.19.)	“정세 완화나 외부의 원조에 대한 사소한 미련도 배격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2020.10.3.)	“평화, 번영이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가혹한 제재·봉쇄를 장장 수십년간이나 억척같이 이겨냈으며 그 과정에 더욱더 강해졌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첫째,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한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면서 남한의 주선으로 미국과의 핵협상에 나섰는데,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에서 보듯 성과없이 끝나고 대북 제재만 지속되는데 대한 반발과 남한 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임. 둘째는, 근본적으로 외부 지원과 남북 협력에 대한 반발일 수 있음. 이는 그간 남한이 북한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이라는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일 수 있음.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정상국가화 (party state system)가 정착되면서 남북관계를 민족간 공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국가간 협력의 대등한 파트너십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민족이 남북간 연결의 정서적 동기인 것은 분명하나 과거처럼 남이 북을 지원하는 시혜적 관점은 거부하고 있음.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2019.10), ‘WFP의 남한 쌀 지원 제의’ 거부(2019.7), ‘그 어떤 외부 지원도 거부’(2020.8) 지시 및 ‘평화번영이 아무리 중요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2020.10.3.) 등의 메시지는 국제사회와 남한에 의해 주도되어 온 협력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보면, 북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한 협력사업도 일방적이고 시혜적 차원이 아닌 북한의 입장과 수요를 고려한 상호적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의 영향을 받고 있음. 유엔안보리는 북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 관련 13개의 제재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북제재위에서 이행을 감시함.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현대화법’ 등을 만들어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규제함.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적 제재, 제3자 제재)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거래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대북 교류를 하는 민간단체 간부와 만나보면, 유엔이 대북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려 중국을 통해 물품을 북한에 보내려 해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대금 결제를 달리로 해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을 의식해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며 북한 지원은 사실상 끊겼다고 토로함. 사실 북한에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수송 수단, 북한내 제재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인물 제척 등 위반이 될 요인들이 많음.

결국,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의결을 받거나 미국의 제재(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결국, 국제사회에서 먼저 대북 인권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 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스탠스와 북미관계 개선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

## 3. 남한의 입장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단절된 대북 협력사업 복원에 주력해오고 있음.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북한의 비협조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이견은 비록 인권 차원의 협력이라 할지라도 정책 추진력을 감소시키고 지속적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남한내 보수와 진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보수는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할 경우 핵개발에 쓰일 것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진보는 북한과 공존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는 인식 아래 대북 협력에 적극적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남한 주민들간에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도 보이고 있음. 북한의 국경 장기 봉쇄나 외부와의 협력 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감염병의 특성상 남북한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연대 의식과 북한의 후진적 의료환경에 대한 연민이 있음.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초정파적 지지 선언과 함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가 북한과 교류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4. 대북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대북협력사업 참여자가 남한과 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 민간단체, 기업 및 국제사회(유엔기구, NGO 등) 등 다양화되면서 관련된 거버넌스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과 민간분야간 남북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남한의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의욕은 넘치나,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대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노하우가 부족하고, 자칫 대북 브로커에게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각 주체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각 참여자간 정치적 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로 메타(Meta) 거버넌스를 검토할 수 있음. 메타 거버넌스는 국가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조종하고(steering) 조정하는(coordinating)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 대북사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주무부처)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은 예산, 정보와 지식, 조직과 네트워크, 갈등 해소 역량일 것임. 이러한 전략적 자원을 UN 등 국제사회와 북한, 그리고 지방의 각 참여 주체에 대응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5.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북 협력은 투 트랙으로 접근

먼저, 식량문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층 지원 등 기본적 인권과 직결된 사안은 인류 보편적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국제사회, 국제기구와 협조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인권과 연계된 북한의 병원 건립, 감염병 방역, 산림 보전 등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 조성은 북한 당국과 협의해 남북 협력사업으로 지속성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 Session 1

The Tas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1세션 : 코로나19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Debater / 토론문



Denise K.H. Yoon (Executive Director at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를 통한 남북협력방안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1. 유엔 SDGs 이행점검 체계

1. 유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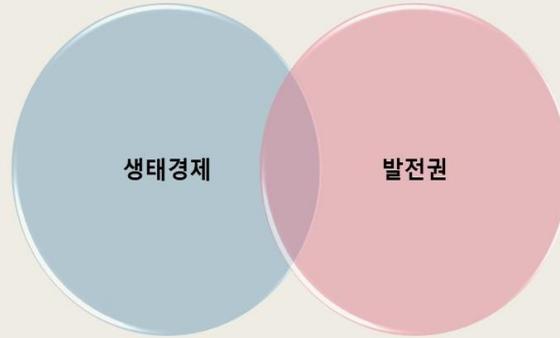
대원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D INEQUAL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17개 분야 169개 목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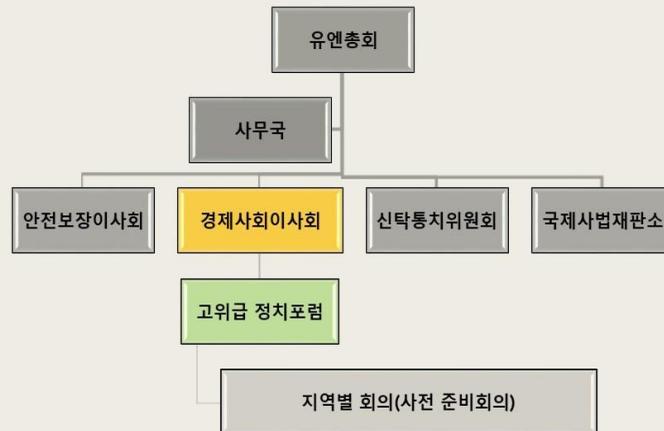
## 1. 유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DGs)



## 2.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 2.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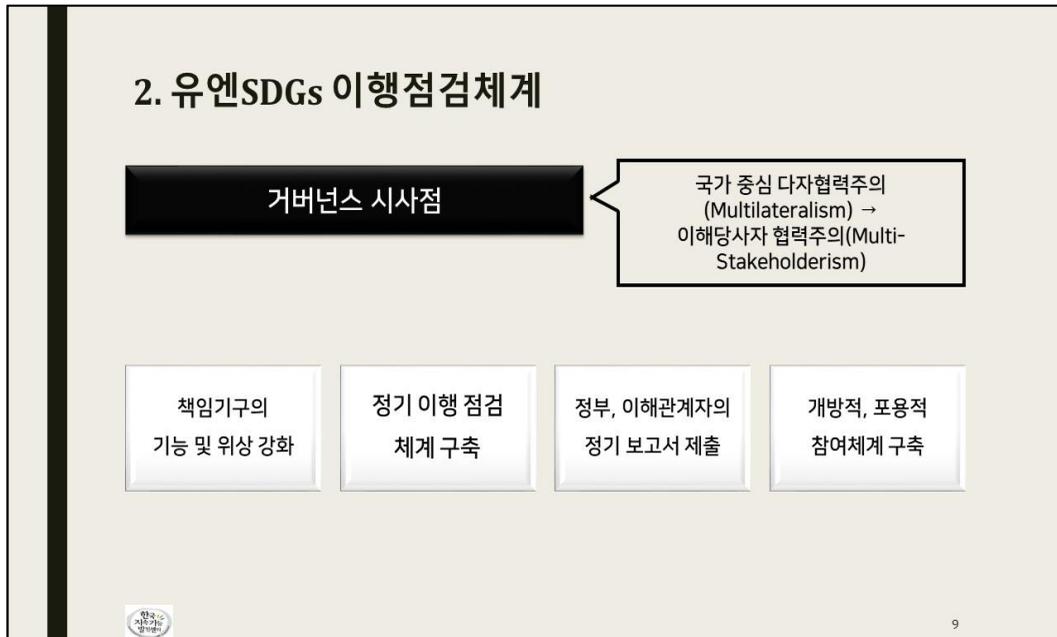


7

## 2.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8



## 2.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과 남북협력의 장으로써 의미

-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이 2017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19년까지 북한정부는 회의주체에 따라 유엔 SDGs 담당 외교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림청, 통계청,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원 등 관계자들을 북한대표단으로 파견.
-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의 경우,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각 나라별, 주체별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이나 ‘고위급 정치포럼’이 정부간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과 다른 특징을 지님.
- 이러한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의 특징 때문에, 남북협력을 하는데 ‘공공외교’의 장으로써 활용이 가능함.

-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주체그룹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범주의 내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 시민사회그룹의 활동과 문제제기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각 정부는 보다 풍부한 현실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간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아이디어 확보가 가능함.
- 동북아 시민사회는 회원국에 ‘동북아 SDGs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역시 SDGs를 통한 역내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한 만큼, SDGs를 매개로 한 동북아 및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유엔 SDGs를 통한 남북간 직·간접적인 협력 및 지원 가능 내용
- 다양한 북한관계자가 동북아 포럼 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는 매년 특정 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회의구조와 UNESCAP의 참가비 지원에서 비롯됨.
- 동북아/아태/글로벌 포럼에 다양한 북한관계자들의 참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UNESCAP을 통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한편, 지난 3년 동안 북한정부가 동북아 포럼 장에서 보여준 입장을 보면, 물자 공급 중심의 인도적 지원보다 기술이전 및 협력과 상호 주고 받는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 정립을 중요시함.
- 예를 들어, 북한의 식량안보 및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직결되는데, DMZ 민통선 마을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생태계 보호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임진강마을협의체’, ‘돼지열병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남북농민공동작업반 구성’ 등 주민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 이는 남북 주민의 생존 및 삶의 질 개선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고려되면서 유엔제재를 비켜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봄.
- 같은 맥락으로 두루미 등 철새 멸종위기종 보호를 ‘동북아 SDGs’로 설정하여 역내 협력 및 이행 조치를 통해 남북협력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음.



## Session 2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세션 :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



Bo-hyuk Suh (Research Fellow at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Changes in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as Revealed in Its UPR Report and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o-hyuk Suh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Introduc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protesting mo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calls for improving human rights as a political offensive. Nevertheless, the DPRK is cooperating with some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ized in the socioeconomic domain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As a UN member, the DPRK submitted three human rights reports, each in November 2009, April 2014, and May 2019, for review. The DPRK's response to the UPR can be analyzed to surmise changes in DPRK's human rights policy and situation. In particular, the Kim Jong-un regime's human rights policy can be grasped by analyzing the second and third UPRs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as well. At the end of 2017, the Kim Jong-un regime changed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the "total commitment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ook advantage of the nuclear issue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US). By comparing the direction of DPRK's human rights policy in the third cycle UPR with the first two UPRs,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Kim Jong-un regime's human rights policy and its changes is possible. In that context, the RO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s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the 2000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UPR reports. The primary study subjects are three UPR reports submitted by the DPRK and recommendations reviewed by the UNHRC, including the ROK's recommendations. The study also examined changes and trends in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during the UPR report submission.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outlook of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and measures to utilize the DPRK's UPR reports well.

## 2. DPRK's Human Rights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rights policy presented in the DPRK's UPR reports are inconsistent with its domestic report<sup>1)</sup>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1)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sessment, (2) the human rights improvement policy, and (3)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gree.

The first aspect is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sessment. As stated in the UPR report, the DPRK revealed its limitations, problems, and positive aspects distinct from the domestic report. While the domestic report contains only positive evaluations centered on the legal system, some limitations are acknowledged in the UPR report. During the last three UPR review processes, the DPRK has acknowledged some difficulties in human rights situations related to soci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ood and health, humanitarian assistance reques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isits and field investigations, and lift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DPRK has also acknowledged the dehumanizing treatment in investigating social rights, such as rights to food

---

1) Here, the domestic report refers to the "Report of the DPRK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Studies" published on September 13, 2014. The report was published four months after the DPRK submitted its second UPR report.

and forceful repatriation of defectors, and expressed that it would respect human rights during the general defectors' investigations and send them home after.

While acknowledging that there has been a problem with the above human rights situations, the DPRK attributed the cause to internal aspects, such as the tolerant attitude of some bureaucrats, the urban-rural disparity, and the energy conditions. The problem leads to the request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DPRK's officials, raising awareness in rural and remote areas, and improving energy policies and international support and lifting sanctions.

The second aspect is the human rights improvement policies, wherein the DPRK emphasiz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the UPR report, which differs from internal human rights policies that emphasiz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resolution on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has judged that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is severe, caus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pply pressure and support to improve it. While the DPRK opposed the pressure by defending its political sovereignty, a cooperative attitude was shown for the support. The DPRK has 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quests to improve human rights by sig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on women,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ing and revising domestic laws and establishing related organizations. Around the time of the third UPR reporting, the DPRK has established a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s also engag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supplemented the policy on children's rights. The DPRK has also made the judiciary independent, established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shown a positive response toward joi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and signing conventions. Because these measures do not immediately imply substantial human rights improv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onitor and promote technical cooperation for such improvement. Still, the DPRK'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a part of the achievemen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and the DPRK's steps ahead of the past are undeniable.

Lastly, in terms of human rights improvement measures, the DPRK shows more interes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n bilateral relations with specific countries or unilateral internal policies, and their scope is widen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early days was mainly based on a dialogue on politics and human rights with the European Union (EU) and some member states, and cooperation with humanitarian aid agencies. However, the EU's political and human rights dialogues soon ceased, and although the cooperation with humanitarian aid agencies continued, the scope narrowed. The DPRK has been passive in cooperating with the UN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until now. However, as the DPRK acceded to the UPR, dialogues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encies have expanded and are seen as a positive outcome resulting from the DPRK's association and dialogue with related specialized agencies inside and outside the UN, and acceding to technical cooperation in improving the vulnerable groups' human and social rights. The DPRK communicates with 13 UN specialized agencies,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showed interest in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Furthermore, the DPRK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accede to dialogue with theme-based Special Procedures and charter-based bodies' Special Procedures on human rights. In early May 2017, the DPRK supported a special rapporteur's visi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the DPRK maintains its current political system and foreign policy, the human rights policy stance the DPRK has taken will not change until the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treaty is successful, which includes (1) the subject's human rights ideology, (2) prioritizing national sovereignty, and (3) human rights policies centered on social rights. Nevertheles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the DPRK's "total commitment to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o succ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PRK's posi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orms of human rights improvement is required. The DPRK's recent legal system-centered human rights policy and dialogu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encies can also be evaluated in that context. However, a passive attitude will continue toward human rights cooperation with the ROK because of the national system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n nations.

### 3. Changes in DPRK's Human Rights Policy

#### 1) "Supported" Position and Subsequent Changes

##### A. Recommendations supported by the DPRK during its first cycle UPR

The DPRK supported 81 recommendations, including duplicate responses, during its first cycle UPR, as shown in Table 1.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 (1) enhanc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enhanc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enhancing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groups, (4) improving human rights mechanisms, and (5) addressing humanitarian issues.

**Table 1. Recommendations supported by the DPRK during its first cycle UPR**

Field	Major Recommendations
Enhanc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ivate and promote civic groups</li> <li>• Ensure full respect for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religion or belief, and movement</li> </ul>
Enhanc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cure the right to food for all its citizens</li> <li>• Lessen the shortage of medical facilities and medicine</li> <li>• Work on enhancing the free health-care program and free primary education, obtaining the necessary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li> <li>• Allow more freedom for people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li> <li>• Work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omote social rights</li> </ul>
Enhancing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li> <li>•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management post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li> <li>•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and provide all children with equal opportunities to study</li> <li>• Give priority to vulnerable groups in the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li> <li>• Combat human trafficking and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li> </ul>
Improving human rights mechanis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opt the rights-bas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legislation, and strengthen its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li> <li>• Provide human rights training to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li> <li>• Establish measures against crimes</li> <li>• Treat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with humanity, and give all in detention a fair trial</li> <li>• Continue to strengthen its human rights dialogu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li> </ul>

Field	Major Recommend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fill its obligations assumed in several conventions to which it is a party,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li> <li>• Foster a human rights culture with due regard to national and regional particularities</li> <li>• Pursue cooperation with the Council’s thematic procedur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objectivity, impartiality, and nonpoliticization</li> </ul>
Addressing humanitarian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cilitate family reunion in cooperation with the ROK.</li> </ul>

\* Source: Reorganized based on the UNHCHR’s recommendations in the “Position of the DPRK on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during its first cycle UPR (A\_HRC\_WG.6\_19\_PRK\_1\_DemocraticPeoplesRepublic\_of\_Korea\_Annex\_E)”

The DPRK most passively supports the recommendation for rights to freedom; however, the DPRK supported the recommendations to cultivate and promote civic groups and “respect” for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religion or belief, and movement.

The DPRK most enthusiastically supports the recommendations for social rights. The DPRK supported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ing food, health, medical care, and education, and expanding its investment in resources. Under humanitarian principles, the DPRK also suppor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romoting social rights, that is, cooperation with UN agencie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and the visits of relevant agencies to the country and their regional access. On the other hand, the DPRK unsupported the recommendation on freedom

of movement, which belongs to the rights to freedom theme, but supported it when freedom of movement was limited to the activa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e DPRK also fully supported the 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vulnerable groups' rights. Moreover, the DPRK supported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improvement for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including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s for women's rights, the DPRK supported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the laws and systems to protect women from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national decision-making bodies, such as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s for children, the DPRK supported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overall right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It also supported giving priority to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in the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s for human rights mechanisms, the DPRK supported significant criminal justice recommendations,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national law development based on human rights. Notably, the DPRK supported a recommendation on preventing and punishing human rights abuse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Furthermore, the DPRK also supported the need for training for those in the judicial fiel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on crime prevention, eradica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were also supported.

A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PRK supported human rights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supported to

respect several conventions to which it is a party,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ensuring that its national laws are in line with these conventions. It also supported submitting its pending reports to the relevant treaty bodies and fostering a human rights culture with due regard to national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Furthermore, the DPRK also supporte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of nonpoliticization in the human rights field, expressing its agreement with the opinions of countries, such as Iran and Cuba, with similar human rights ideologies. Among the recommendations supported during the first cycle UPR, the most remarkable posi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o cooperate with special procedures. The supported recommendation to “pursue cooperation with the thematic procedures of the Council, based on the principles of objectivity, impartiality, and nonpoliticization” is a good sign of the DPRK’s position for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Lastly, the DPRK supported the recommendation to guarantee separated families’ right to know their family members’ fate across the border and communicate and regularly meet together in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PRK unsupported specific human rights improvement matters under Special Procedures, but supported family reunions even if the recommendation comes from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the DPRK.

## B. Changes in the DPRK’s supportive position

The DPRK generally expanded its supportive position in all fields, but it

refuses to support recommendations on separated families’ humanitarian issues if they include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Among the fields supported later on, social rights and human rights mechanisms stand out, which are the guarantee of civic groups’ activities of and cooperation with all Special Procedures. However, the DPRK’s supportive position is nominal, given how there is no report on their implementation. The UPR recommendations that the DPRK has supported are summarized in Table 2.

**Table 2. UPR recommendations additionally supported by the DPRK**

Theme	Supported Recommendations
Civil and political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ghts to the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and religion</li> <li>• Posting human rights treaties on national communication networks</li> <li>• Guaranteeing civil society entities’ activities</li> </ul>
Social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ban-rural disparity; climate change</li> </ul>
Rights of the vulnerable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tifying CRPD; promoting women’s social participation</li> <li>• Ensuring access to improve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persons in detention</li> </ul>
Human rights mechanis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li> <li>• Human rights education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li> <li>• In-principle cooperation with Special Procedures;</li> <li>•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li> <li>•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li> <li>• Opera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li> </ul>

The recommendations related to promot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the DPRK most passively supported in the first cycle UPR, were further refined in the second and third cycles. In the first cycle, the recommendation was to “respect”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religion, or belief. However, during the second cycle, the rights were more concretely defined as “allowing persons belonging to any religious community or group

to exercise their religion independently and publicly,” “guaranteeing the basic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llowing the population to access to information freely.” Raising awareness on human rights through the related publication was a recommendation newly supported in the second cycle.

Similar changes appeared in the third cycle wherein the supported recommendations include (1) the disclosure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that the DPRK has ratified on the national network service, (2) allowing persons belonging to a religious group to exercise their religion independently and publicly, and (3)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whe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function independently.

Among the recommendations in the field of social rights supported by the DPRK during the second and third cycles, the DPRK’s efforts to improve the right to food, health, medical care, edu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reemphasized. An item was added to social rights promotion related to the urban-rural disparity in the second cycle, wherein it is recommended to minimize the disparity by improving housing and sanitation in rural areas.

In the third cycle, all policies that the DPRK pursues or should pursue were mentioned in detail. For example, the recommendations were that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dopted at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2016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that more resources for school infrastructure should be alloc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A new recommendation was added in the third cycle on the steps taken to ensure that thos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re included in domestic

measures.

The DPRK continuously supports the recommendations on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fforts of the authorities and cooperation with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se groups' rights. Furthermore, in the second and third cycles, the vulnerable's rights scope was widened as (1) the DPRK supported the recommendation for ratification of CRPD in the first cycle and joined CRPD in July 2013. The recommendation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nd thoroughly verified under this Convention was naturally added during the second cycle. As an extension, the DPRK supported new recommendations in the third cycle, such as increasing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remove the stigma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iminating physical barriers in public spaces. During the third cycle UPR, (2)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advocating for wom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such as the increased recruitment of female officers and their strengthened roles in policy-making agencies. The third cycle's notable point is that the DPRK supported the recommendation of granting acces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cluding prisoners."

In improving human rights mechanisms, the DPRK continued to support laws and institutions improvements to guarantee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fair trial administration during the first through third cycles. The second cycle's notable change is the DPRK's support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function that was unsupported during the first cycle UPR. Creating a national mechanism for the review of complaints of the popula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was a recommendation newly supported during the second cycle.

The second cycl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judicial system were further refined in the third cycle. The DPRK supported recommendations, such as reforming the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increasing the efforts for awareness-raising about human rights among officials of the people's power and law enforcement organs. As for th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mechanisms, the DPRK supported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ratified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facilitat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operate with UN agencies during all three cycles.

Another new recommendation made during the second cycle was to continue its efforts to comple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mai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first cycle. Under the "cooperation with special procedures" theme, the DPRK supported a new recommendation that slightly differs from that of the first cycle, to cooperate with special procedures on the premise of "nonpoliticization." In the second cycle, the recommendation was to "cooperate with treaty organizations, as well as UNHRC's special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out the modifier "nonpoliticization."

During the third cycle UPR, the DPRK supported more intense recommenda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uman rights. For example, in the first and second cycles, the DPRK's position on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was "noted," but it was changed to "supported" during the third cycle. An additional recommendation was made to operate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achieve tangible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country is a party.

The human rights issue in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raised in the DPRK's UPR is family reunions. During the first cycle, the DPRK supported the recommendation but unsupported it during the second cycle because the recommendation during the first cycle to "guarantee separated families' fundamental right to know their family members' fate across the border and communicate and regularly meet together" was changed to "address the issues of abductees, prisoners of war and separated families seriously" during the third cycle. During the third cycle, the DPRK supported the ROK's recommendation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commitments made at the inter-Korean summits," implying that humanitarian cooperation is unlikely as long as the separated families' reunion includes "abductees."

## 2) DPRK's "Noted" Position and Subsequent Changes

### A. Change in the "noted" position

The DPRK "noted" 15 recommendations during the first cycle UPR, including (1) the ratification of ICERD,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2) joining ILO and extending an open invitation to ILO officials, (3) amending the *Labor Law of the Industrial Complex of Kaesong* and incorporating the minimum age of 18 years for work hazardous to minors' health, security, or morality, (4) allowing

freedom of movement of the people as a way to generate economic activities, (5) granting access to WFP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6) incentivizing thos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7) accepting the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OHCHR.

Some recommendations remained unchanged while others were changed during the second cycle UPR. The “noted” position for the recommendations on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joining ILO, and freedom of movement remained unchanged. On the other hand, the DPRK supported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unspecifi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still not a party. Although ILO was excluded, the DPRK supported to take measures to ensur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reaches the most vulnerable and needy. To that end, it supported to secure entirely satisfactory monitoring conditions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As for the third cycle UPR, some recommendations were retained while others were changed. The position to “note” the recommendations on the ratification of CAT, signing ILO, and accepting the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OHCHR remained unchanged. However, the “noted” position on the ICERD ratification, including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still not a party during the first and second cycles, has changed to the “supported” position during the third cycle.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the FAO, the position supporting humanitarian agencies and organizations during the second cycle was further expanded to “securing unlimited humanitarian access to all provinces of the country” during the third cycle. However, the organizations were not named in any of the three cycles.

## B. Evaluation

The recommendations not supported by the DPRK during the first cycle UPR, such as the CAT ratification, signing ILO, and accepting OHCHR's technical assistance, were “noted” during the second and third cycles, and the ICERD ratification was “supported” during the third cycle. The acceptance of humanitarian approaches in improving the lives of the vulnerable and locals gradually expanded during the second and third cycles.

The changes in the DPRK's position to the UPR recommendations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types. One is the change from “unsupported” and “noted” to “supported,” including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uch as ICERD, and cooperation, in the form of granting humanitarian access to provide assistance. Another type is the change from “unsupported” to “noted.” These changes include the CAT ratification, signing ILO,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OHCHR. The most positive change in the DPRK's position is th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 3) DPRK's “Unsupported” Position and Subsequent Changes

#### A. Changed in the “unsupported” position

The DPRK “unsupported” 15 recommendations during the first cycle UPR, including (1) national criminal legislation re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of individuals, (2)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creation and acceptance of technical assistance from OHCHR in setting up this national institution, (3) the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by granting them access to the country, and (4) providing access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ICRC)

to all detention facilities in the country.

Among the unsupported recommendations, the revision on the criminal code restricting individuals' movement continued to be unsupported during the second cycle. However, the DPRK supported the recommendation to facilitate its citizens' travel abroad under the "freedom of movement" theme. The posi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wed a remarkable change. The "unsupported" position in the first cycle was changed to the "noted" position to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 change was made to support the recommendation to cooperate with special procedures, excluding specific requests, such as "allowing the special rapporteur to visit the country" under the "cooperation with special procedures" theme. The recommendation on providing access to ICRC to detention facilities in the country was unsupported in the first and second cycles. However, the "noted" position was given to the recommendation on stopping the use of ill-treatment for detainees in detention facilities.

During the third cycle UPR, several "unsupported" positions of the first cycle were changed to the "noted" positi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under the Paris Principles was unsupported during the first cycle; the position was changed to "noted" during the second cycle and continued until the third cycle. The position on cooperation with special procedures changed significantly during the third cycle. Granting access to all special procedures that request to visit the country and allowing for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 to the country, which were "unsupported" during the first cycle, were "noted" during the third cycle. The recommendation on stopping the use of ill treatment for detainees in detention facilities, which was noted during the third cycle, was added with

a requirement of “fair trial guarantees.”

## B. Evaluation

The “unsupported” position consistently taken during all three cycles was on the recommendation to amend the law on freedom of movement. Although passive, the position was changed to “support” to “make travel easier” rather than revising the law.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position was changed from “unsupported” during the first cycle to “noted” during the second and third cycles. Another position change is for cooperation with special procedures, wherein the “unsupported” position during the first cycle on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on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was changed to the “noted” position during the third cycle.

The above changes can be organiz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case where the DPRK changed its position from “unsupported” to “noted,” including (1) the establishing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establishment, (2) stopping the use of ill treatment for detainees in detention facilities, (3) granting access to all special procedures’ request to visit the country, and (4) allowing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 to the country. The other case is when the DPRK changed its position from “unsupported” to “supported,” such as (1) facilitating the easy travel of its citizens abroad and (2) cooperating with special procedures. However, changes in the DPRK’s position are limited because the “noted” position cannot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change, “supported”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procedures is not realistic in the short run, and the DPRK’s regulation will restrict the facilitation of its citizens’ travels abroad.

## 4. Recommendations of the ROK and their Implications

### 1) ROK's Recommendations for the UPR of the DPRK

The ROK determined that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was severe and expressed its keen interest whenever the DPRK submitted a UPR report. Whenever the DPRK expressed its position during the three UPR cycles, the ROK and its civic groups expressed their concrete position. Table 3 shows the ROK's position during the UPR and the DPRK's response to it.

**Table 3. ROK's recommendations and the DPRK's position**

UPR Cycle of the DPRK	ROK's Recommendations for the UPR of the DPRK	DPRK's Position
1 (2009)	Cooperat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by granting them access to the country	Unsupported
	Guarantee separated families' right to know their family members' fate across the border and communicate and meet regularly	Noted
2 (2014)	Seriously review all the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review and clearly indicate which recommendations are accepted as well as their implementation plans	Supported
	Accept and faith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f the DPRK, especially those contained in the Human Rights Council's resolution	Unsupported
	Seriously address the issues of abductees, war prisoners, and separated families	Unsupported
	Close political prison camps, eliminat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system, and cooperate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Unsupported

UPR Cycle of the DPRK	ROK's Recommendations for the UPR of the DPRK	DPRK's Position
3 (2019)	Cooperate with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health	Supported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ROK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separated families' issu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commitments made at the inter-Korean summits	Supported
	Address the issues of abductees and war prisoners	Unsupported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articipation in the review by the CRPD	Supported
	Ratify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DPRK is still not a party, including CAT and ICERD	Supported

As shown above, the ROK's recommendations during the three UPR cycles of the DPRK were expressed extensively in the field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cial rights, human rights mechanisms, and humanitarian issues. Human rights mechanisms and humanitarian issues were recommended during all three cycles, indicating the ROK's high interest. These two themes can also be viewed as the most significant areas for improving the DPRK's human rights, given the DPRK's low level of human rights and its dem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his end, a more detailed and realistic approach based on the ROK's consistent recommendations on both themes is noteworthy. The ROK's recommendations are also considered positive as these recommendations increased from 2 to 4 and 5 dur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cycle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ist basic themes, such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social rights, were mentioned selectively rather

than continuously. In humanitarian issue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commendations' categories have differed as influenced by the contex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DPRK's reaction. However, consistency in ROK's recommendations is necessar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response to the ROK's recommendations, the DPRK showed one "unsupported" and one "noted" positions during the first cycle, one "supported" and three "unsupported" positions during the second cycle, and four "supported" and one "unsupported" positions during the third cycle. The "supported" positions are the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social rights,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separated families' reunion. In contrast, the "unsupported" position is the recommendations on cooperating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by granting them access to the country and sensitive humanitarian issues, such as detention facilities for political prisoners,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The DPRK maintains a consistent stance in its "supporting" and "unsupporting" positions.

The position that the DPRK changed from "noted" or "unsupported" to "supported" relates to the matters that are functional in resolving humanitarian issues or accep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or DPRK has judged to be of practical benefit. If not, the "supported" position meant "supported in principle." In this case, when the ROK makes recommendations during the DPRK's UPR, the ROK considers whether the DPRK can support the recommendations and reflect on the situ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are the major concerns of the ROK at the time.

On the other hand, determining the ROK's consistency to the DPRK's UPR is difficult. The ROK's position during the second cycle UPR was focused on

its position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s rather than the DPRK's supportability. In this context,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ROK raised a prominent issue that the DPRK will not support, such as accepting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s recommendations, resolving the abductees and war prisoners' problems, and closing political prison camps. The ROK's position during the third cycle UPR is the opposite as they recommended the rights to health, separated families' issue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atification of non-ratifi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uch as CAT and ICERD, which the DPRK supported. Thus, determining the validity of either of the two is inappropriate. Nevertheless, the ROK must seriously consider under what standards and policies it should determine its position to the DPRK's UPR. If the ROK focuses on context rather than consistency as it does now, the DPRK will unlikely pay attention, and limitations in delivering a reliable vo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present.

Another implication is that the ROK must cooperate more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areas where the DPRK's support is expected into practical improvements. During the DPRK's UPR, the ROK needs to make efforts to respond to the DPRK's UPR and the consistent and intensive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DPRK through the UNHRC, the UN General Assembly, and special procedures for the year. If so, the DPRK will likely hear a clear messag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flect that message on its human rights policy.

## 5. Prospects of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 rights-violating countries take the typical path of (1) the denial of human rights violations, (2) formal and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s, (3) substantial but partial improvement, and (4) full-scale improvement.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s for improving human rights for the past 30 years but with minimal internal measures, the DPRK's current human rights policy transitions to the "formal and procedural improvement" phase from the "denial" phase.

Forecasting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is challenging as it is hard to foresee the future of the DPRK's regime, and many factors will lead to changes in the DPRK's regim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policy for the DPRK. Assessing the impact of the internal, external, and contingent factors on the DPRK comprehensively when forecasting changes in the DPRK's regime, such as (1) the prospect of a non-nuclear peace agre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2) the direction of the DPRK's regime's development strategy, (3)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DPRK, and (4) rapid climate and geological changes, is challenging. Accordingly, the DPRK regime's human rights policy may continue fundamentally; however, predicting which direction it will take, as it is impossible to judge the aspects of changes, is also difficult.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olicy toward the DPRK is likely to continue under the UN's and EU's policy stances, the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DPRK-US. negotiations and the DPRK-China relations.

Despite these limitations, several variables exist, such as the Kim Jong-un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view on the national image. Therefore, although limited, positive measures can be expected in the human rights policy. On this premise, predictions can be made in the following four aspects of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1) the international politics related to human rights in the DPRK, (2) human rights policy direction, (3) human rights policy means, and (4)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politics related to human rights in the DPRK will be governed by the direction of the non-nuclear peace agreement externally and the influence of marketization internally. Among them, the non-nuclear agreement's prospect will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suppose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is concluded and implemente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US's new administration. In that case, the DPRK's marketization will also gain momentum, and three signs of the transformation to the so-called socialist economic system, including privatization and dollarization, will appear simultaneously. The DPRK will choose the gradual transition chosen by China and Vietnam rather than the radical transition chosen by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socialist circles. Nevertheless, favorable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formed to improve the DPRK's human rights through citizens' demand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increased intelligence, and the government's upturn in its economic development goal.

However, if the non-nuclear agreement falls through or into stagnation, the DPRK's economic policy will be based on "self-reliance" rather than "reform and open door," resulting in slowing marketization. The scope of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the economy will be reduced significantly due to political sensitivity. For the time be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s is more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lated to security rather than the endogenous factor of the DPRK's human rights,

and by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factors.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s direction will remain as controllable improvement measures under a conservative stance, which means that the DPRK's continuity of its existing human rights ideology and political line. Controllable improvement measures are characterized as (1)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economic benefits and (2)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economic benefits refer to those implemented at the economic policy level and their suppor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refer to the human rights policy. Economic policies under sanctions are bound to be limited, but legal systems related to economic and trade, such as tourism, logistics, investment, and development, can be improved with some countries. Human rights policies that support economic policies include freedom of movement of the people as a way to generate economic activities, free of information, and training and publicity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human rights policy refers to a policy developed to promote external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o improve and enhance the DPRK's external image. In that context, the DPRK's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developed until recently, are expected to continue to a level to which such dialogue and cooperation will benefit the DPRK's economy. In that way, the DPRK's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ll continue to improve its external image.

Based on the above projections, the DPRK will adopt human rights policy measures that emphasize appeasement rather than oppression, exchange, and isolation. For example, through the UPR, the DPRK can be more active in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anding access to human rights information, allowing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ccepting technical assistance from OHCHR in establishing human rights system, and continuing the dialogue related to internationally-specialized organizations. However, the DPRK will not recogniz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itiatives and maintain the improvement method under its control. Under this premise, the DPRK may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s, such as CAT and its Optional Protocol, and ICERD, to which it is still not a party. Going a step further, the DPRK may also grant access to the theme-specific special rapporteur on children's and women's rights and rights to food. Such appeasement and exchange measures can be useful for showing off the DPRK's efforts in improving human rights while gaining economic benefits derived thereof.

When considering the DPRK's future human rights policies by field, improved measures will be taken for the vulnerable's social and human rights. These measures do not threaten the system but help economic development, system solidarity, and increased resident participation.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performance-based pay, patents and invention rights, and rights to dispose of agricultural surpluse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for the system solidarity, education policy reform, and policy improvement, promoting the rights of children, youth,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xpected while strictly suppressing political criticism. As for increasing resident participation, measures, such as revitalizing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can be taken, which accompanies residents' participation, improved human rights, the position of the relevant professional organizations respected in education and health policies, and more women taking high-ranking positions. These changes will be limited in that the DPRK's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would not develop in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vertheless, increased participation can be a seed for the improveme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bove all,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focusing on social rights, and the vulnerable's rights will inevitably create ripple effects. However, the timing and impact are difficult to foresee in the short run; they can only be predicted in the long run by the DPRK's external relations and political dynamics.

## 6. Conclusion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s characteristics and trends were examined through the DPRK's UPR reports. Differentiated response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DPRK's various positions, such as "supported," "noted," and "unsupported."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rection for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 (1) Supporting and cooperating for the recommendations supported by the DPRK,
- (2) Monitoring and criticizing for the recommendations unsupported by the DPRK, and
- (3) Monitoring and supporting the recommendations that the DPRK has changed its position from "unsupported" to "noted" or "supported."

Reviewing the background, significance, and implementation plans of the DPRK's changed "supported" position must be prioritized to develop support measures.

The success of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depends on how effectively the three parties, the Korean government, civic group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pect their status and roles and play their given roles. However, the DPRK's human rights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direction that inspires and guides the DPRK's government and citizens to make their efforts to consciously improve human rights.

Fundamental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policy for the DPRK is a large-scale, long-term engagement policy. Thus, the UPR mechanism, in which the DPRK actively participates, should be utilized more efficiently. Lastly, this study's limitation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ed, noted, and unsupported recommendations of the UPR by the DPRK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must be further reviewed.

##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

서보혁 (통일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북한은 대부분의 국제인권레짐에서 제기하는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경제사회 분야의 일부 유엔전문기구와 협력하고 유엔인권이사회회의 보편정례검토제도(UPR)에도 응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2009년 11월, 2014년 4월, 2019년 5월 등 세 차례에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응하였다. 북한의 UPR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인권 정책 및 상황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기간 동안 이뤄진 2, 3차 UPR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을 파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정책에 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발전 총매진 노선으로 전환하고 핵문제를 활용해 남한, 미국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그리고 3차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방향을 지난 1, 2차 UPR과 비교 평가해보면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의 성격과 변화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 UPR 분석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정책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이 글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를 UPR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 그부터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 연구대상은 북한이 제출한 세 차례 UPR 보고서와 그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검토한 권고이다. 거기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분석 내용에는 UPR 보고서 제출 시기별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와 추세가 포함된다. 분석 결과, 북한 인권정책의 향후 전망과 함께 북한 보편정례보고의 활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북한의 인권정책

북한이 UPR 보고서 상에 반영한 인권정책의 특징은 국내 보고서<sup>1)</sup>와 비교할 때 크게 보아 △인권 상황 평가, △인권 개선 정책, △국제협력에 대한 비중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인권 상황 평가에서 북한은 UPR에서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내용 보고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용 보고서는 법제도 중심의 긍정 평가 일색인데 비해 UPR 보고서에는 한계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세 차례 UPR 심사 과정에서 북한은 식량권, 보건권 등 주로 사회권과 관련한 인권 실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의 방북 및 현장조사,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해왔다. 또 북한은 식량권 등 사회권, 재입북한(혹은 강제송환된)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대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단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후 귀가 조치, 조사 중 인권존중 노력을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은 위와 같은 인권 실태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일부 관료들의 안일한 태도, 도농(都農) 지역간 격차, 에너지 사정 등 대내적인 측면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 관료들에 대한 인권교육, 농촌 및 오지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에너지 정책 개선, 이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요구로 연결된다.

둘째, 인권개선 정책과 관련해 UPR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은 법제도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는 대내 인권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 결의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압박과 지원해 왔다. 북한은 압박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권 수호를 앞세워 반발하는 대신, 지원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맞서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협약 가입, 국내법 제·개정, 관련 기구 설치 등으로 대응해 왔다. 3차 UPR에 즈음해서 북한은 장애인 권리 관련 법제도를 확립하고 국제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북한은 아동권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정책

1) 여기서 국내보고서는 2014년 9월 13일 발간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말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2차 UPR 보고서 제출 4개월 후에 발간되었다.

을 보완하였다. 또 북한은 사법부 독립,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립, ILO 등 미가입 국제 인권기구 및 협약 가입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런 조치가 곧바로 실질적 인권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취하는 법제도적 조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가 거두는 성과의 일부라 할 수 있고 북한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인권개선 방법과 관련해 북한은 특정 국가와의 양자관계나 일방적인 대내정책보다는 국제협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권개선을 향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은 처음 유럽연합 및 일부 회원국들과의 정치 및 인권 대화, 그리고 인도적 지원기구와의 협력이 주였다. 그러다가 EU와의 정치 및 인권대화는 중단되고 인도적 지원기구와의 협력은 계속되지만 그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과 관련 전문기구와의 협력에는 소극적이었는데, 북한이 UPR에 응하면서 국제인권 전문기구와의 대화와 협력은 확대되어왔다. 그것은 북한이 취약집단의 인권과 사회권 개선을 위해 유엔 안팎의 관련 전문기구 가입, 대화, 기술협력 등에 응하면서 발생한 적극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런 유엔 전문기구들로는 WFP, FAO, UNDP, UNEP 등 13개 기구, 그리고 UNHCHR과의 기술협력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주제별 인권 특별절차는 물론 현장기구상의 특별절차와의 대화에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2017년 5월 초, 북한이 장애인차별금지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도 기억할 만하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 대외정책 노선이 지속되고, 비핵평화 협상이 성공하기까지는 북한이 취해온 인권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주체의 인권관, △국가주권 우선, △사회권 중심의 인권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경제발전 총매진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규범, 즉 인권개선에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북한이 최근 나타내고 있는 법제도 중심의 인권정책과 국제인권기구들과의 대화도 그런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남한과의 인권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될 것이다.

### 3.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 1) '수용' 입장과 이후 변화

가. 1차 UPR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은 81개(중복응답 포함)이며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자유권 증진, △사회권 증진,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인권메커니즘 개선, △인도적 문제 해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1> 북한이 수용한 1차 보편정례검토의 권고 사항

분야	주요 권고 사항
자유권 증진	시민단체 육성 및 촉진 결사표현·종교·이동의 자유 존중
사회권 증진	모든 주민의 식량권 보장 의료시설 및 의약품 부족 개선 무상보건의무상교육 강화 및 국제원조 확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확대 사회권 증진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취약계층 권리 증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아동권리 보장 및 동등한 학업기회 보장 취약계층에 우선한 국제원조 배분 인신매매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인권 메커니즘 개선	인권 친화적 국내법 개정,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강화 법 집행관 대상 인권 교육 및 훈련 범죄대책 수립 및 시행 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공정한 재판의 기회 부여 국제인권메커니즘과 인권대화 지속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실 이행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문화 육성 객관성·공정성·비정치화의 원칙에 따라 특별절차와 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한국과 협력하여 이산가족 상봉 추진

\* 출처: OHCHR의 “Position of the DPRK on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during its first cycle UPR(A\_HRC\_WG.6\_19\_PRK\_1\_DemocraticPeoplesRepublic\_of\_Korea\_Annex\_E)” 문서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첫째, 자유권과 관련한 분야의 권고는 북한이 가장 소극적으로 수용한 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존중’한다는 수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둘째, 사회권 분야의 인권개선과 관련한 권고사항은 북한이 가장 폭넓게 수용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 보건,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국가의 자원 투자 확대 등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또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사회권 분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즉 유엔기구 및 국제 NGO와 협력하고 해당 기구 및 단체의 방북과 지역 접근 등을 수용하였다. 한편, 자유권에 속하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고는 북한이 기각한 점이지만 경제활동의 활성화 측면에 국한될 경우 수용하였다.

셋째,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도 북한이 적극 수용한 사항이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였다. 여성권에서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국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수용하였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보건 등 전반적인 권리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원조가 있을 경우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도 수용하였다.

넷째, 인권 메커니즘과 관련해 북한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의미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국내법의 발전이 인권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법 집행관에 대한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었다. 특히, 법 집행관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수용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국제 기준에 맞게끔 사법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수용하였다. 이 외에도 범죄예방, 인신매매 근절,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권고사항도 포함되었다.

다섯째, 국제협력 분야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및 협력 등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기존에 가입한 바 있는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존중하면서 국내법이 해당 조약과 조화되어야 하고 지연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수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문화 육성이나 인권 분야의 비정치화된 환경 육성 등과 같은 권고사항도 수용하였다. 이는 이란과 쿠바와 같이 자국과 유사한 인권관을 지닌 국가들의 의견에 찬성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1차 보편정례검토의 수용 사항 중 국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특기할 점은 특별절차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이다. “객관성, 공정성, 비정치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제별 특별절차들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권고 수용은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여섯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한국과 협력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추진 등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특별절차에 입각한 구체적인 인권개선 사항은 거부하였으나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라고 할지라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의 변화

아래 <표 2>는 북한이 수용을 늘린 UPR 권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수용 입장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산가족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 거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수용을 늘린 분야 중에서도 사회권과 인권 메커니즘 개선 부분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단체의 활동 보장과 모든 특별절차와의 협력인데 이는 아직 이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어 북한이 언술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북한이 수용을 늘린 UPR 권고사항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표 2〉 북한이 수용으로 바꾼 UPR 권고사항

영역	수용 확대 사항
자유권	결사·표현·종교의 자유, 인권조약 국가통신망에 게재, 시민단체 활동 보장
사회권	도농 격차, 기후변화
취약계층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여성의 사회적 참여 적극 표방, 죄수 등 취약집단 권리 개선을 위한 접근 보장
인권 메커니즘	사법부 독립, 법 집행관계자의 인권교육, 특별절차와의 원칙적 협력, 인종차별 철폐조약 비준, 국제인권조약 이행 국가위원회 운영

첫째,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이 가장 소극적으로 수용한 자유권 증진 관련 권고사항은 2차와 3차 검토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1차 검토에서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도로 기재된 권고사항을 수용했다면, 2차 검토에서는 ‘모든 종교 신도들이 독자적으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보장’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대중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인권 의식 제고도 2차에서 새롭게 수용한 권고사항이었다.

3차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났다. 관련 수용사항으로는 인권인식 제고를 위해 당국이 가입한 인권조약을 국가통신망에 게재하라는 점,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점,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점 등이 있었다.

둘째, 1차 보편정례검토 이후 2차와 3차에서 북한이 수용한 사회권 증진 분야의 권고사항 중 식량, 보건, 의료, 교육권의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변화의 특징은 사회권 증진의 대상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2차에서 북한이 새롭게 수용한 권고사항은 도농 격차에 관한 점이다. 농촌 지역의 주택이나 위생 등의 상황을 개선하여 양 지역 간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3차에서는 북한이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반영되었다. 예컨대 2016년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

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점, 교육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학교 인프라에 대한 자원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관련 권고사항이었다. 한편, 기후변화 및 측정과 관련한 조치를 통해 이에 민감한 구성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3차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

셋째, 북한이 수용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인도주의적 기관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이였다. 이에 더하여 2차와 3차에서는 취약계층 권리 증진의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

먼저 북한은 1차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을 권고사항으로 수용하였고 실제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권고는 자연히 2차에서 새롭게 수용된 사항이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3차에서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공공장소에서의 물리적 장벽 제거 등의 권고사항을 새롭게 수용하였다.

3차 보편정례검토에서 기존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한 권고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권고에는 여성장교의 채용을 늘릴 것, 여성이 정부 기관의 지도적 위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같은 점이 포함되었다. 한편, 3차 수용사항에서 주목할 점은 ‘죄수들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국제단체의 접근이라는 권고를 수용한 사실이다.

넷째, 인권 메커니즘 개선에서 북한은 법-제도의 인권 친화적 개선, 법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공정한 재판의 기회 부여 등을 1차~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용하였다. 2차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으니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다. 독립된 사법부에 관한 권고는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바였으나 2차에서는 수용한 권고사항이 되었다.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일반 대중의 진정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2차에 새롭게 수용한 권고사항이었다.

사법체계 분야 개선에 대한 2차의 권고사항은 3차에서 보다 심화되었다. 북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권력기관 및 법집행기관 관계자의 인권 인식 개선 노력과 같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에서 북한은 1~3차에 걸쳐 공통적으로 기존 가입한 규약에 대한 성실한 준수, 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 대화, 유엔 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권고를 수용하였다.

2차에서 새롭게 추가된 권고는 1차를 포함한 보편정례검토에 대한 이행이다. 이와 함께 특별절차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비록 미묘한 차이지만 새로운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1차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은 ‘비정치화’를 전제로 한 특별절차에 협력한다는 것이었으나 2차에서는 ‘비정치화’라는 수식 없이 ‘조약기구뿐만 아니라 인권 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협력 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3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은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강도가 보다 높은 권고사항도 수용하였다. 단적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비준은 1차와 2차에서 유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에서는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Rights Treaties) 운영 및 이행 가시화라는 권고사항도 3차에서 추가되었다.

다섯째, 북한이 받은 보편정례검토에서 나타난 남북관계 관련한 인권 이슈는 이산가족 상봉이다. 1차에서 북한은 이점을 수용하였으나 2차에서는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할 것”이라는 1차의 권고내용이 2차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차에서 한국의 권고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슈가 빠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관련 약속 이행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었고 북한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이 납북자 문제와 연결되는 순간 인도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 북한의 '유의' 입장과 이후 변화

### 가. 유의 입장의 전개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은 15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유의하겠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및 국제노동기구의 방북 허용, △개성공단 노동법 개정과 미성년자의 노동 최저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이동의 자유 허용, △세계식량기구 및 식량권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 및 자문 수용 등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2차 보편정례검토에서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권고된 협약에 대한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동의 자유에 대한 허용 등은 여전히 유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변화된 지점으로는 협약의 명칭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아직 당사국이 아닌 국제인권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였다. 또한 세계식량기구는 제외되었으나 취약계층을 위하여 인도주의 기관과 협력하고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는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완전한 모니터링 조건을 보장한다는 입장도 포함되었다.

3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의 입장은 일부 유지되기도 하였고 바뀌기도 하였다. 먼저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 수용과 같은 권고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남았다. 그런데 당사국이 아닌 핵심 인권협약을 비준할 것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1차와 2차에서 유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비준이 3차에서는 수용하는 결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특기할 점이다. 한편, 세계식량기구는 1~3차 기간 여전히 기구명이 특정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2차의 인도주의적 기관·단체에 대한 허용 입장이 3차에서는 '전국 모든 지방에 대한 무제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으로 보다 확대되었다.

### 나. 평가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북한의 기각 입장 중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유

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의 기술지원 수용은 2차~3차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비준은 3차에서 수용 입장으로 전환되었고, 취약계층 및 지방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수용이 2차와 3차에 걸쳐 점차 확대되었다.

정리하면 북한의 입장 변화는 크게 두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기각, 유의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협약 비준, 인도주의 기관의 현장접근 보장 등 협력이다. 다른 한 변화 유형은 기각에서 유의로 변경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UNHCHR과의 기술협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한 분야는 대부분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3) 북한의 '기각' 입장과 이후 변화

#### 가. 기각 입장의 전개

북한이 1차 보편정례검토에서 기각한 권고사항은 15건으로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형사법 개정,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수용,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 협력,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 허용 등이었다.

기각된 사항 중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형법 조항의 개정은 2차에서도 지속된 입장이었다. 단, 북한은 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해외여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였다.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관련한 입장은 주목할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한 1차의 기각 결정이 2차에서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유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특별절차에 있어서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이 제외된 단순히 특별절차와의 협력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감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은 2차에서도 기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수감시설의 죄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차 보편정례검토에서는 북한이 1차 당시 기각한 입장이 유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인권 증진을 위한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은 1차에서 기각하였다가 2차의 유의 입장이 3차에서도 지속되었다. 한편, 특별절차와의 협력에 관한 입장은 3차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특별절차에 따른 방북 요청 허용, 독립적인 인권 관련 조사자에게 접근권 제공 등은 1차의 기각이 3차에 이르러 유의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2차에서 유의 입장이었던 수감시설에 대한 부당 대우 개선에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되었다.

#### 나. 평가

세 차례의 보편정례검토에서 일관된 기각 입장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었다. 물론 소극적이었지만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아닌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 등의 권고일 경우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변화된 지점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으로서 1차에서 기각 입장은 2~3차에서 유의로 바뀌었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특별절차와의 협력은 초기 기각 입장이었으나 3차에서는 방북 및 접근권 제공 등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두 유형으로 정리하면, 하나는 북한이 기각에서 유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립, 구금시설에의 부당한 대우 개선, 특별절차에 따른 방북 허용, 독립적 인권 조사자의 접근권이 포함된다. 다른 한 유형은 기각에서 수용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해외여행 편의, 특별절차와의 원칙적 협력이다. 기각 분야에서 북한이 보인 변화는 제한적이다. 유의로 바꾼 부분을 긍정으로 보기 어렵고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 중 특별절차와의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이 낮은 문제이고 시민의 해외여행 편의 보장은 북한의 규제에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한국정부의 권고 사항과 그 함의

### 1) 한국정부의 북한 UPR 권고사항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북한이 UPR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북한이 세 차례의 UPR에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한국은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아래 <표 3>은 한국 정부가 북한 UPR 심사시 표명한 입장으로서,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까지 담고 있다.

<표 3> 북한 UPR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반응

북한 UPR 시기	한국의 권고	북한의 입장
1기(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특별보고관들 및 인권메커니즘의 방북 허용을 통한 협력</li> <li>-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통신, 정기적인 상봉 권리 보장</li> </ul>	<p>불수용 유의</p>
2기(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시 논평 및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어떠한 권고를 수용하고 어떻게 이행할지를 분명하게 표명</li> <li>- COI 권고,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들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이행</li> <li>- 납북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li> <li>-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제에 기반한 차별 철폐,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포함한 인권메커니즘과 협력</li> </ul>	<p>수용  불수용 불수용</p>
3기(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권 증진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li> <li>-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 협조해 나갈 것</li> <li>-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li> <li>-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li> <li>-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포함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할 것</li> </ul>	<p>수용  수용 불수용 수용 수용</p>

위에서 보듯이 한국정부가 세 차례 북한의 UPR 심사시 나타낸 입장은 자유권, 사회권, 인권 메커니즘, 인도적 문제 등에 걸쳐 폭넓게 나타났다. 그중 인권 메커니즘과 인도적 문제 해결은 세 차례 모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만큼 한국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이 두 분야는 북한의 낮은 인권 수준과 국제협력에 관한 북한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실효적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두 분야에 대한 일관된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더 세밀하고 현실성 높은 접근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을 만하다. 또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 사안이 각각 2개, 4개, 5개로 증가한 점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에 비해 국제인권 목록에서 기본적인 분야인 자유권, 사회권을 지속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생각해볼 대목이다. 인도적 문제의 경우, 입장 표명의 범주가 다르게 나타난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이는 물론 남북 관계의 맥락과 북한의 반응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바이지만 실질적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관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북한 UPR 입장 표명에 대해 북한이 보인 반응은 △1차- 불수용, 유의 각각 1개, △2차- 수용 1개, 불수용 3개, △3차- 수용 4개, 불수용 1개로 나타났다. 수용한 부분은 사회권 개선,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이고, 불수용 부분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특별절차 수용, 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민감 인도적 사안이다. 북한이 수용하거나 불수용하는 입장은 대체로 일관된다.

북한이 유의나 불수용에서 수용으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국제인권 메커니즘 수용에서 기능적이거나 북한에 실익이 있다고 보이는 방식이다. 그것도 아니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정부가 북한 UPR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 시기 북한의 수용가능성만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 상황이나 해당 시기 한국정부의 주요 관심사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한국정부가 북한의 UPR에 대한 반응이 일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차 UPR에 나타난 한국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수용가능성보다는 한국의 원칙적 입장 혹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 수용,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을 제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차 UPR에 나타난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 반대

양상이다. 건강권, 이산가족, 장애인권리,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비준 국제인권협약 비준 등을 요구해 북한이 수용했다. 이 두 형태 중 어느 경우가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북한 UPR에 대한 입장을 어떤 기준과 방침에 의해 수립, 표명할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바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관성보다는 맥락성에 치중해 접근할 경우 북한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경청할 가능성이 낮고, 국제사회에도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함의는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예상되는 영역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문제이다. 북한 UPR 심사 시기에 한국정부는 북한 UPR 대응은 물론, 해당 연도의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특별절차 등을 활용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뚜렷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인권정책에 반영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 5. 북한 인권정책의 향후 전망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인권 침해국가들의 인권 개선은 처음 인권침해 사실 부인> 형식적·절차적 개선 조치> 부분적 실질 개선> 전면적 개선의 수순을 밟는다. 지난 30여년 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과 대내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조치로 현재 북한 정부의 인권정책은 부인에서 형식적·절차적 개선 조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체제의 미래를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할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체제 변화 전망에 있어서도 △북미 비핵평화 협상의 전도, △북한정권의 발전전략 방향, △북한 내 정치사회 변동의 가능성, △급격한 기후 및 지질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우연적 요소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가늠하기 힘들다. 그에 따라 북한정권의 인권정책도 기본적으로 지속성이 크다 볼 수 있겠지만, 변화의 측면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한 방향으로 전망하기도 어렵다. 국제사회의 북한정책은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정책기조에 따라 연속성이 우세해 보이지만, 북미 협상과 북중관계의 영향

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변수, 즉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 정책과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부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인권 정책에서도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는 북한의 인권정책을 △북한인권 관련 국제정세, △인권정책 방향, △인권정책 수단, △인권 분야 등 네 측면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인권 관련 국제정세는 대외적으로 비핵평화 협상의 향방, 대내적으로 시장화의 영향력 크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규정을 받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비핵 협상의 전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비핵 협상이 타결돼 이행 국면으로 나아가면 북한의 시장화도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민영화, 달러화(dollarization) 등 소위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의 3대 징후가 동시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래도 북한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과 같은 급진적 체제전환보다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 전환의 양상을 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요구 및 정보력 증대, 그리고 정권의 경제발전 목표 상향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인권 신장에 우호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평화 협상이 결렬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고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정책도 개혁개방보다는 ‘자력갱생’을 기조로 할 경우, 시장화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북한도 정치적 민감성에 의해 경제에서 개혁개방의 폭은 극히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북한인권 관련 정세는 △북한인권 내생적인 요소보다는 안보 관련 국제정세, △북한 대내적인 요소보다는 대외 요인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의 인권정책 방향은 보수적 기조 아래 통제가능한 개선 조치에 머무를 것이다. 보수적 기조란 앞서 말한 북한의 기존 인권관과 정책노선을 지속한다는 의미이다. 통제가능한 개선 조치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는데 경제적 실익 증대 차원의 정책과 국제협력용 정책을 말한다.

경제적 실익 증대 차원의 인권정책은 경제정책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책과 그것을 지

지·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말하는데, 인권정책은 후자와 관련된다. 물론 제재 하의 경제정책도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 국가들을 겨냥해 관광, 물류, 투자, 개발 등과 관련한 관련 경제·무역 법제도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인권정책이란 경제활동 확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 확대와 인권 법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들 수 있다.

국제협력 (인권)정책은 경제발전과 관련해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북한의 대외 이미지 개선 및 제고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국제인권기구와의 대화 협력은 지속될 전망이고, 그 확대 정도는 북한에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국제인권기구와의 대화 협력은 대외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지속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이 전망한다면 북한은 인권정책 수단을 △탄압보다는 유화, △고립보다는 교류를 증시할 것이다. 가령, 북한은 UPR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 정보 접근 확대, 사법부의 독립성, 전반적인 인권제도의 확립을 위한 UNHCHR 과의 기술협력, 그리고 관련 국제전문기구들과의 대화 등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통제 하의 개선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북한은 필요시 고문방지협약, 아동 노동 및 포르노그래피 금지 협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가입에 나설 수도 있다. 더 진전된 경우 북한은 아동, 여성, 식량권 등 주제별 유엔 특별보고관의 현지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화 및 교류 조치는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그로부터 파생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넷째, 향후 북한의 인권정책을 분야별로 전망해보자면 사회권과 취약계층의 인권에서는 개선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체제 약화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발전, 체제결속, 주민 참여 증대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는 능력에 따른 성과급, 특허 및 발명권 도입, 농업에서 잉여처분권 증대가 예상된다. 체제결속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교육정책 개혁, 아동 및 청소년, 여성,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이 예상된다. 한편, 주민 참여 증

대 측면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활성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참여 인권 개선, 교육·보건정책에서 해당 직능단체 입장 반영,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전망은 북한의 인권 개선 조치들이 시민정치적 권리로 나아가지 않는 한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참여의 증대는 시민정치적 권리 개선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회권과 취약계층에 치중한 인권 개선 조치들은 결국 파급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과 영향은 단기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북한의 대외관계 및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 6. 맺음말

이상의 북한 제출한 UPR 보고서를 통해 인권정책의 특징과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북한이 보이는 수용, 유의, 기각 등 다양한 반응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령,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① 북한이 수용한 조치에 대한 지원과 협력; ② 북한이 거부한 조치에 대한 감시와 비판; ③ 북한이 유의, 수용 쪽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한 감시와 지원. 특히, 북한이 수용으로 태도를 바꾼 조치에 대해 그 배경, 의미, 추진방안 등 세밀한 검토와 지원 대책을 갖추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을 만하다.

북한인권정책의 성공은 한국정부, 시민단체, 국제사회, 3자가 각자의 위상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정부와 주민이 인권의식을 갖고 인권 개선에 스스로 나서도록 촉진하고 인도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대규모 장기 관여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북한이 적극 반응하고 있는 UPR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곧 후속과제로 북한이 UPR에서 수용/유의/거부한 입장의 이행 상황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일을 남겨놓는다.

## Session 2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세션 :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ter-Korean after Trump and COVID-19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부교수)







## Session 2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세션 :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 Debater / 토론문



Buhm-suk Baek (Associate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백범석 (경희대학교 부교수)



## Session 2. Discussion on a new challenge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uhm-Suk Baek (Kyunghee University)

### 1.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n the pas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d consistently been criticized for causing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by pointing out countries that are concerned about certa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ticizing them publicly. Eventually, to replace thi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established when the Human Rights Council was created in 2006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60/251. The introduction of the UPR process means that the focus is on capacity building and providing advice for the actual human rights improvement of the country under review, rather than criticiz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ertain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goal is to enhance the capacity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on human rights in the states under review. Also, it aims to share best practic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mong stakeholders and support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UPR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is a unique process that regularly reviews the human rights records of all 193 UN member states. That is, 48 UN member states are being reviewed for their human rights situations every year. It is similar to the national reporting system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that member states submit national reports and reviews take place through interactive discussion.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at the UPR deals with all human rights challenges, not just dealing with obligations under the treaties.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not achieved effectiv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now, as the UPR passes the 3rd cycle,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the process operates as a kind of occasion or formal convention. Thus, the effective intervention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NGOs, is more emphas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R we've reviewed so far will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 **2. Changes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viewed through the UPR**

As research fellow Bo-hyuk Suh pointed out in his presentation, North Korea has been responding to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especially the UP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relatively quite a bit, despite resisting the voice of human rights improvement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political offensive. This has proved to some extent that the UPR is an important means fo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continue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is show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bilateral relations with a specific country or internal policy in the ways of improving human rights, an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change of North Korea's position in coping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erefore, this presentation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in-depth North Korea's position (accept, note, reject)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the situations that led

to changes in the North's human rights policy through the first, second and third UPR. At the same time, as the presenter emphasized, I partially agree that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should be ultimately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and guid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its citizens to make their own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with an awareness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social right are interdependent and inseparable, it is necessary to promote human rights cooper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sectors that North Korea can accept. This is because it is only possible if North Korea has the political will and ability to pursue it. Starting with the social right and the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which North Korea is currently interested i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ffectively bring about changes in North Korea in the long term by gradually expanding the cooperation sectors. Especially, as the borders were closed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outbreak, the problem of people's livelihoods in North Korea is becoming more prominent. It shows that humanitarian relief is urgently needed.

Under the same context, in 2021, it is necessary to first focus on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food, and nutrition, and allowing and expanding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 to support the vulnerable in North Korea. Based on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DPRK 2017-2021,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technical cooperation to promote health and welfare in line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or this, people-to-people contact and dialogue are also important, beyond contact between auth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radual reform of the entire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capacity

building of civil society and change of citizen's awareness within North Korea,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cesses are need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more meaningful information to flow into North Korea and for the North Koreans citizens to be more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lso consider North Korea's responses to recommendations of the UPR and prioritize and highlight human rights issues that can be discussed together between the two Koreas.

### **3. Discussion on the Launch of the U.S. Biden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ich had been vacant for nearly four years, is expected to be filled by the new administration. Also, discussions on linking North Korea's nuclear and human rights issues are expected to begin in earnest, as was the cas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is also pointed out at the end of Professor Easley's presentation.

In the past,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the most active country in rais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 Starting from the 2015 executive order, in 2016,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specified as the reason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list of sanctions was announced through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and follow-up executive orders. At the same time, the 2016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the impact of diverting resources to advanc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mes on th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citizens

of the DPRK. It was the first time to include expression link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with human rights issues.

In addition, sanctions imposed by individual countries, not by the UN, may have many facets that imply "comprehensive sanctions," and in the past, the U.S. Democratic Party (for example, the Trump administration's sanctions against Iran) has paid attention to this, so it would be considered tha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citizens of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 4. New Southern Polic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fter President Moon Jae-in was elected, he announced the New Southern Policy and its control tower, strategies, and plans and has implemented the policy. Above all, the so-called New Southern Policy Special Committee, which is a control tower that will unify the policies toward Southeast Asia, which has been highly emphasized by experts in Southeast Asia since then, was established in 2018, and has since announced and carried out the 'New Southern Policy Promotion Strategy'.

Meanwhile, ASEAN has been keeping an ey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ASEAN Summit and related meetings, concerns, and hope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expressed. Traditionally, it supported a peaceful resolution based on neutrality and especially emphasized dialogue and neutrality, not sanc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ASEAN will seek an active ro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re have been strong voices for the past three year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South and North Korea (2) channel'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Korea-ASEAN dialogu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the construction of an East Asian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Considering that ASEAN has used the ASEAN method as a means of building mutual trust and providing a venue for discussion rather than a direct solution when major conflicts occur in and outside the region, and to build mutual trust, it could also serve as a channel for dialogue on human right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human rights challenges of ASEAN countries, such a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disabled,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migrants, are quite similar to those of North Korea.

The end.

## 제2세션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토론문

백범석 (경희대)

### 1. 보편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과거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특정 인권침해 우려 국가들을 지목하여 공개 비난함으로써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결국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총회 결의 제60/251호를 통해 현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하면서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가 마련되었음. UPR 제도의 도입은 특정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기 보다는 검토대상 국가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및 자문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함. 즉 검토대상국의 인권보호능력 및 인권관련 기술적 지원 향상, 이해당사자의 좋은 사례 공유(best practice),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협력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즉 매년 48개 유엔회원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 받고 있음. 회원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대화 형식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권조약감시기구의 국가보고제도와 흡사한 면이 있지만, 조약상의 국가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실제 효과적인 국내 이행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제3차 UPR을 지나면서 해당 제도가 일종의 의식 내지 형식적인 관례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결국 시민사회와 인권 NGO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개입과 참여가 더욱 강조됨.

지금까지 살펴본 UPR의 특징은 북한인권문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임.

## 2. 보편정례검토를 통해 바라본 북한인권정책의 변화

서보혁 연구위원이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개선 목소리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엔인권메커니즘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의 UPR에는 상당부분 대응해 오고 있음. 보편정례검토 제도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인권 관련 대화를 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증명한 셈임.

인권개선 방법과 관련해 북한이 특정 국가와의 양자관계나 일방적인 대내정책보다는 국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처하는 북한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번 발제문을 통해 보편정례검토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수용, 유의, 기각)과 이후 1차, 2차, 3차 UPR을 거치면서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상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은 매우 유의미함. 동시에 발제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정부와 주민이 인권의식을 갖고 인권 개선에 스스로 나서도록 촉진하고 인도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동의함.

결국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국제사회를 통해 인권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이 이를 도모할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갖출 시에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임. 현재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회권 및 취약계층의 인권을 시작으로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COVID 19 사태의 여파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는 인도적 차원의 구제책이 시급함을 의미함.

같은 맥락에서 2021년에는 우선적으로 보건, 식량, 영양 등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내 활동 허용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북한-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제시한 바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는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도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한 방식으로 당국간 접촉을 넘어서서 사람대사람간(people to people)의

접촉과 대화도 중요함. 북한 내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주민의식변화를 통한 북한사회전반의 점진적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활발한 교류 및 협력과정을 통해 북한 내부에 보다 유의미한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보다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대한민국도 UPR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고려하여 남북한 간에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인권사안들을 우선순위로 포함시키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3.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관련 小考

우선 4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자리가 신 행정부에서는 채워질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같이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연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됨. 이는 Easley 교수의 발제문 말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임.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국가였음. 2015년 행정명령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대북제재강화법 및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북핵 문제 외에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제재 사유로 명시하고 제재 리스트를 발표함. 같은 시기인 2016년 유엔 총회결의를 보면 전문에서“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및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한 표현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해당 결의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최초로 북한 주민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신 행정부에서도 핵과 인권문제를 연계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을 국제사회를 향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의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임.

추가로 유엔이 아닌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는 ‘포괄적 제재’의 요소를 내포하는 측면이 크고, 과거 미 민주당은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등에 대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목해 왔던 만큼, 같은 차원에서 대북 제재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될 것으로 보여짐. (Human rights and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 4. 신남방정책과 북한인권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신남방정책기조를 발표하고, 관련 컨트롤타워와 추진전략과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집행해 왔음. 무엇보다 그 이전부터 동남아시아전문가들이 매우 강조해왔던 對동남아정책을 일괄할 컨트롤 타워인 소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2018년 만들어지고, 이후 ‘신남방정책추진전략’을 발표 및 추진해 왔음.

한편 아세안은 그간 한반도 사안을 주시해왔음.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와 희망을 표시해 왔음. 전통적으로 중립성에 기반하여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였고, 특히 남북한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제재 일변도가 아닌 대화 병행과 중립성을 강조해 왔음.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 대목임.

따라서 기존 한-아세안 대화관계와 연계한 ‘아세안+남북한(2)채널’을 구축한다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정치안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지난 3년간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아세안이 역내외 주요 갈등 사례와 관련 직접적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상호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아세안방식을 활용해 왔음을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인권협력대화를 위한 통로도 될 수 있을 것임. 아세안 국가들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인권문제들, 예를 들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및 이주민 인권 보호 등은 공히 북한 인권이슈들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있음.

끝/

## Session 2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세션 :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의 새로운 도전

## Debater / 토론문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at UN OHCHR Seoul)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DPRK – New Cooperation Tasks for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COVID-19 era –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I. Work of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OHCHR Seoul office was established in 2015. The office’s main mandates are 1) strengthen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s steps towards establishing accountability in the DPRK; 2) enhance engagement and capacity-building with the Governments of all States concerned,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and 3) maintain visibility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e also support the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DPRK categorically reject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claiming they are politically motivated and based on fabricated information. Therefore, the DPRK refuses to engage with the Seoul office as well as the Special Rapporteur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We currently have 9 staff members including 5 international staff. Denied access to the DPRK, we rely on interviews of escapees from the DPRK who have re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from United Nations agencies in Pyongyang,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 II. Curr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Under the COVID-19 pandemic, while the scale of the pandemic within the country is still unknow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 extremely serious. COVID-19 pandemic and preventative measures may not have created many new human rights concerns in relation to the DPRK, but rather magnified and exacerbated existing ones.

### 1. Freedom of movement

The shutdown of border with China since January 2020 has resulted in a drastic decline in trade and commercial activities, affecting the overall economy and livelihoods of the people in the DPRK. In the first half of 2020, exports dropped by 74.7 per cent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9.

COVID-19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across country borders and within the country have further inhibited people's coping strategies to make their living, which include engaging in private market activity in response to a failing public distribution system. See OHCHR report, *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2019), pp. 8-18. Prior to COVID-19 restrictions, these people were already vulnerable to a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reedoms of movement and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nd limited market opportunities are being further curtailed.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living in the border regions and relying on commercial activities have reportedly lost their source of income and are struggling to fulfil their basic needs. The number of kotjebi (street children) and homeless people is increasing, many families cannot afford two meals a day, some may be

starving, and some have gone to the mountain as a last resort to survive by cultivating small plots of land.

Furthermore, to enforce these COVID-19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s, there have reports of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cluding a reported shoot to kill policy of people attempting to cross the country border.

## 2. Right to food, to water and sanitation and to health

Prior to COVID-19 pandemic, 47.9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12.2 million people, were undernourished in 2016-2018 and the rate of tuberculosis wa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before COVID-19. This indicates that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VID-19.

Chronic and acute malnutrition is also linked to unsafe drinking water, poor sanitation and hygiene and absence of essential medicines. Around 33 per cent of the population - 8.4 million people - do not have access to a safely managed water source, rising to 50 per cent in rural areas. Much of the population is therefore regularly exposed to the risk of waterborne diseases, such as diarrhoea, which is among the leading causes of child mortality and malnutrition in the country. The lack of safe water makes it difficult to abide by hygiene guidelines issued by the authorit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border closures have caused farmers to suffer from a lack of necessary agricultural inputs such as fertilizer and gasoline at a critical time. 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import of fertilizer totalled 4.38 million dollars, which is one-ninth of the import a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ccess to

agricultural supplies, which was already negatively affected by sanctions prior to COVID-19 preventative measures, was further limited due to the border shutdowns and movement restrictions, and may have caused low harvests this year. Furthermore, flooding caused by heavy rains in August and September 2020 that left thousands of hectares of crops damaged. Prospects of a further deepening of food shortages and widespread food insecurity is a serious concern not only due to the danger of starvation but also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due to poor nutrition.

In April,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PRK approved a 7.4 percent increase in the health budget in 2020 while the defence budget did not increase. The Government has reportedly been taking preventative measure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started in the world in early 2020. Still, limited capacities of health facilities and people's lack of access to health services is a great concern.

### **3.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exacerbated existing concerns regarding the denial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PRK.

Information over the nature of the pandemic and infected people is essential for people to make well informed judgements over how best to protect themselves,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wider community. However, the Government maintains a monopoly over information and total control over organized social life. Information that was increasingly seeping in through the border with China, via the movement of people for market activity, has also been shut down since the closure of the land border at the end of January.

No freedom of expression is allowed through private publication in the DPRK. People are denied access to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ng with people outside the country, with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mobile phone usage made possible through mobile phone surveillance technology. People cannot self-organize to engage in community support, pressure adequate responses from the State, and engage in information and resource sharing through the formation of spontaneous networks either.

To enforce the Government's COVID-related restrictions, including in relation to freedom of movement, the State has strengthened its pervasive system of surveillance. This system operates at every level of society, through entities such as the neighbourhood watch units (inminban) and the above-mentioned groups closely linked to the Workers Party of Korea. A recent report indicates that COVID-19 measures have led to a tightening of control over workers as well, resulting in an increase in sentencing to detention in labour training camps.

#### **4. Situation of prisoners**

The dire situation in places of detention is one of the most well documented, due to the body of witness testimony received from former detainees who have subsequently been able to escape to the ROK. In his June statement, the Special Rapporteur highlighted that COVID-19 could further exacerbate the situation of prisoners, who already received very little and poor quality food, with malnutrition common in prisons. He also highlighted that access to safe water was limited, sanitation facilities were inadequate, and health services barely existed.

In the context of COVID-19, he reiterated his call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the release of prisoners, in particular those in vulnerable conditions: older, ill and undernourished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children, pregnant and lactating mothers and nursing parents. In addition, he called on alternatives to detention to be implemented to mitigate the risk of harm within places of detention, including for persons who have committed minor, petty and non-violent offenses or those with imminent release dates.

Prior to this, on 7 May 2020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rote to the DPRK'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to encourage the Government to review the situation in detention facilities,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current population deprived of their liberty whenever possible and as long as it was safe to do so. She recommended that this could include early, provisional or temporary releases through a review of all cases of pre-trial detention, as well as those convicted of less serious charges. Furthermore, pregnant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persons with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individuals detained for offences not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could be prioritized for early release. She stressed that the current crisis also made it imperative to implement non-custodial alternatives to detention whenever possible.

<https://www.ohchr.org/Documents/ProfessionalInterest/BangkokRules.pdf>

### **III. New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1. Decreasing access to information**

As explained earlier, our work rely on interviews of escapees from the DPRK as well as information from other UN agencies. However, the number

of escapees arr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sharply declined, reflecting increased challenges in moving across borders due to COVID-19 restrictions. A total of 48 North Korean escapees arrived in the ROK during the third quarter of this year according to the ROK Ministry of Unification. The figure, including 23 males and 25 females, is a significant drop from the 226 North Koreans that defected in the same period last year.

United Nations humanitarian organizations continue to be unable to function in the country due to the DPRK maintaining one of the tightest quarantine regimes in the world for outsiders. This has meant United Nations staff have been unable to visit any of the humanitarian projects in rural areas; COVID-19 prevention measures continue to prevent staff from leaving the capital (or rotating new members in and out of the countr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staff in-country is now below 20 per cent of what it should be, and is expected to further decrease by the end of the year. The number of diplomats in-country also continues to decrease. Most foreig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umanitarian workers have left or are set to leave the DPRK.

## 2. Impeded humanitarian assistance

The DPRK's strict COVID-19 preventative measures have also impacted the efforts of humanitarian actors to address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As of June 2020, field visits outside of Pyongyang have not been permitted, which has prevented humanitarian actors from delivering and monitoring humanitarian assistance. Consequently, very limited assistance has gone to people in need in food-insecure counties, including pregnant and breastfeeding women and children. This has increased the risk to approximately 560,000 beneficiaries who will not be receiving their daily

micronutrient fortified cereals and biscuits.

### 3. Isolation of the DPRK

The DPRK Government is further isolating the country from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through the slowing down of the acceptance of humanitarian aid. The measures to contain the outbreak of COVID-19 must not compromise programmes aimed at advanc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health, food, water and sanitation and housing, which are equally necessary to combat the COVID-19 pandemic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The authorities of the DPRK have in recent years engaged in some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following participation in a human rights workshop organized in OHCHR in Geneva. This was a positive step. However, it has been challenging to build upon such efforts of engagement this year due to the DPRK's isolating policy and reluctance to make on-line engagement.

At the General Assembly this year, the Special Rapporteur stressed that further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the answer, highlighting that the pandemic concerns the whole world, with no single country able to avoid its consequences. He sees it as an example of how self-sufficiency does not come through isolation. Isolation of the DPRK DPR Korea simply means further isolation of its citizens who are subject to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 4. Detrimental impact of sanctions 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All these restrictions under COVID-19 pandemic are happening in a context wher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has started to seriously affect the entire economy of the country, with adverse consequences not only on humanitarian assistance but also on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cern was further heightened by the impact of COVID-19 together with the floods and typhoons experienced during 2020. It is particularly worrying when the country is further isolating itself and information received from within the country is further limited with the smaller pres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nly a trickle of escapees arriving in the ROK. Under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ere is a compelling need to re-evaluate parts of the sanctions regime.

On impact of sanctions under COVID-19 pandemic,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aid that a variety of sanctions may impede medical efforts, citing the DPRK, amongst other countries:

"The majority of these states have frail or weak health systems. Progress in upholding human rights is essential to improve those systems –but obstacles to the import of vital medical supplies, including over-compliance with sanctions by banks, will create long-lasting harm to vulnerable communities. The populations in these countries are in no way responsible for the policies being targeted by sanctions, and to varying degrees have already been living in a precarious situation for prolonged periods."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44&LangID=E>

## IV. Recommendations

As a way forward, the United Nations and the Special Rapporteur have made a series of recommendations to the DPRK as well a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basic economic and social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urged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invest necessary resources to overcome serious food insecurity.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lso sent a letter to the DPRK on 7 May, in the context of COVID-19, highlighting the need to take steps to ensure a secure environment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to access life's basic essentials, including a safe environment for market activities to take pla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both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d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provide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United Nations entities and humanitarian agencies throughout the territory of the DPRK, as well as access to critical data.

With regard to prisoners, bo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ncouraged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consider early, provisional or temporary releases through a review of all cases of pre-trial detention, as well as those convicted of less serious charges. Furthermore, pregnant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persons with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individuals detained for offences not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could be prioritized for early release.

Regarding strict sanctions imposed on the DPRK, the Special Rapporteur,

in his latest report,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ssess the implications of measures being taken, including sanctions, that impact the right to food. The Secretary-General, in hi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last October, also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take further steps to minimize the unintended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anctions imposed on the DPRK, including in relation to humanitarian assistance. On 24 March 2020,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ssued a press release stressing that "[b]road sectoral sanctions should urgently be re-evaluated in countries fac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n light of their potentially debilitating impact on the health sector and human rights".

Concerning engagement, the Secretary-General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build on initial steps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in capacity develop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s. Both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Special Rapporteur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of DPRK grant access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OHCHR.



# Profile



Choi Young-ae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최 영 애(崔永愛)  
국가인권위원장



### International Position

- Vice Chair,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Member, APF Governance Committee
- Chair,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Working Group on Ageing

### Education

- M.A., Christia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B.A.,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Past Career

- Chair, Human Rights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ity
- Chief Director, The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 Chair, Special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Co-President, Korea Peace Forum
- Standing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Secretary-Genera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 Co-Chair, Special investigative task force o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of research assistant by a college professor
- Chair, Task force on special act against sexual violence
- President,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Term of Office

- Sep. 4 2018-Sep.3 2021

### Elected and appointed by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주요 경력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 및 사무처 준비단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 APF(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수상 경력

- 1994년 여성동아 대상 수상
- 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상 수상
- 2017년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
- 2020년 제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

### 임기

- 2018. 9. 4 ~

Simon Smith (British Embassy Seoul Ambassador)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 Education

Wadham College, Oxford University, MA in Modern Languages

### Work Experience

- 2016 - 2017 Language training (Korean)
- 2015 - 2016 FCO, Leader, Review of Buildings Security
- 2012 - 2015 Kyiv, Her Majesty' Ambassador
- 2007 - 2012 Vienna, Her Majesty' Ambassador & UK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 2004 - 2007 FCO, Director, Russia, South Caucasus and Central Asia Directorate  
/ Head of Eastern Department
- 2002 - 2004 FCO, Head of North East Asia & Pacific Department
- 1998 - 2002 Moscow, Counsellor (Economic/Commercial)
- 1997 - 1998 Language training (Russian)
- 1995 - 1997 FCO, Deputy Head of Southern Europe Department
- 1994 - 1995 FCO, Speechwriter to the Foreign Secretary
- 1992 - 1994 FCO, Head of Nuclear Policy Section, Security Policy Department
- 1989 - 1992 Tokyo, Second Secretary, later First Secretary
- 1987 - 1989 Language training (Japanese)
- 1986 - 1987 FCO, Assistant Desk Officer, East Africa Department
- 1986 Joined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 1981 - 1986 Department of Employment

학력

옥스포드 대학교 워드햄 칼리지 (현대 언어학 석사)

경력

- 2016 - 2017 한국어 어학 연수 (한국)
- 2015 - 2016 영국 외무부 청사 보안 검토 국장
- 2012 - 2015 주 우크라이나 영국 대사
- 2007 - 2012 주 오스트리아 영국 대사 겸 비엔나 유엔대표부 영국 대표
- 2004 - 2007 영국 외무부 러시아/남 코카서스/중앙아시아 국장
- 2002 - 2004 동북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 1998 - 2002 주 러시아 영국 대사관 경제/무역 담당 참사관
- 1997 - 1998 러시아어 어학 연수 (러시아)
- 1995 - 1997 영국 외무부 남유럽과장
- 1994 - 1995 영국 외무장관 연설 담당관
- 1992 - 1994 영국 외무부 안보정책과 행정책임장
- 1989 - 1992 주 일본 영국대사관 1 등/2 등서기관
- 1987 - 1989 일본어 어학 연수 (일본)
- 1986 - 1987 영국 외무부 동아프리카 담당
- 1986 영국 외무부 입부
- 1981 - 1986 영국 고용노동부 근무

Moon-ja Jeong (Standing Commissioner of NHRCK)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주요경력

- 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 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사)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관장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임기

- 2018.6.22 ~ 2021.6.21



Eul-chool Im (Associate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임을출 (경남대학교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Political consultant, National Security Office, Cheongwadae.
-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for Inter-Korean Dialogue, Ministry of Unification
- Vice-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 Member of the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lan Support Group,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Central Committee member and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주요경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부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현)
- 통일부 남북대화 정책자문위원(현)
- 북한연구학회 부회장(현)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Profile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

이대훈(李大勳)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Goodwill Ambassado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NGO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 Director of PeaceMOMO/ Director of Pea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areer

- 2006 - 2010. Executive Director of ARENA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 2005. Legal Advisor, UN Human Rights Subcommittee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2012 - 2015.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sia-Pacific Regional Advisory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 2019 - pres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pecialis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2019 - present Member of the Peace Education Counci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2020 - present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ublications

-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translated), by Michel Chossudovsky, Dangdae Publisher, 1998.
- Reading Together: Human Rights and Peace (Co-author), Sungkonghoe University Human Rights and Peace Center, 2007.
- Peace Education "everyone learning from everyone else," PeaceMOMO, 2016.

##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Violence by Division and Peace Education, Co-author, PeaceMOMO, 2018
- [Joint research] Public diplomacy policy and implementation plan, government commissioned research, 2019, etc.
- (현) 한반도평화친선대사(통일부 위촉)
- (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연구교수
- (현) (사)피스모모 이사/평화교육연구소 소장

### 경력

- 아시아지역대안교류협회 ARENA 이사, 상임이사 (2006-2010)
- 유엔 인권소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외교부 위촉, 2005)
- 유엔 여성안보평화기구 아태지역 자문위원 (2012-15)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2019~)
- 서울교육청 평화교육협의체 위원 (2019~)
-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 (2020~), 등.

### 저서

- 빈곤의 세계화 (역), 미셸 초스도프스키 저, 당대출판사, 1998.
- 인권과 평화 함께 읽기 (공저, 이대훈 외,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7
-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피스모모, 2016.
- 분단폭력과 평화교육, 공저, 피스모모, 2018
- [공동연구] 공공외교 정책과 실행방안, 정부 위탁연구, 2019, 등.



Ji-eun Kim (ALCOM, Korean Medical Doctor)

김지은 (대한여한의사회 홍보이사, 한의사)

- Vice-Chairman of DaesungOrientalHospital.
- Director of PR, KoreaWomen'sOrientalMedicalAssociation
- Member of the Operating Committee,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Student, Graduate SchoolofLaw,KookminUniversity

### Education\*\*\*

- Graduated from ChongjinMedicalUniversitywithadegreeinKorean(Oriental)Medicine
- Graduated from SemyungUniversitywithadegreeinOrientalMedicine
- Completed courses for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Career

-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t a regional hospital in Chongjin,pediatrician,researcherataclinicalresearchinstitute\*\*\*
- 현) 대성한방병원 부원장.
- 현) 대한 여한의사회 홍보이사
- 현)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
-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과정 재학 중 .

##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학력

-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한의과대학) 졸업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편입 및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 경력

- 청진시 구역병원 내과, 소아과 의사, 임상연구소 연구사 근무

Sung-Yul Park (Visiting Professor at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박성열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 Visiting Professor at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Head of Research Planning Center

#### Education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SoongsilUniversity

#### Research Interests

Policy Studies, Inter-Korean relations, Integration of divided nations, Unification leadership

#### Publications

- An Analysis of South & North Korea's Historical Local Exchange Proces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on unification policy, 27(2):135-171, 2018.
- A Study on Unified German's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uilding Case based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ocal Government, 30(4):31-55, 2018, etc.

##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소속/직위

-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 연구기획센터장

### 전공/학위

- 행정학/Ph.D(송실대학교)

### 연구분야

- 정책학, 남북한 관계, 분단국 통합 사례, 통일리더십

### 논문 및 저서

- “지방 차원 대북교류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과 정책점 시사점” 통일 정책연구, 27(2):135-171,2018
- “제도 보안성에 기초한 통인 독일의 지방 행정체제 구축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4):31-55, 2018. 외 다수

Denise K.H. Yoon  
 (Executive Director at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Denise K.H. Yoon

#### Academic Background

- 2011. 9. ~ 2012. 9.  
 MA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University of Sheffield, UK
- 1995. 3. ~ 2000. 2.  
 BA in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The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Careers

- 2014. 5. ~ present Executive Director, The Korea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CSD)
- 2016. 6. ~ present Secretary General, Korea SDGs Network
- 2019. 1. ~ present Focal Point of East Asia Sub-region, AP-RCEM with Asia 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APFSD) by UNESCAP, Member of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 AP-RCEM
- 2015. 9. ~ present Member,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KFEM/FoE Korea)

##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학력

- 2011. 9. ~ 2012. 9.  
영국 쉐필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졸업
- 1995. 3. ~ 2000. 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

### 주요경력

- 2014. 5. ~ 현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사무국장
- 2016. 6. ~ 현재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
- 2019. 1. ~ 현재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시민사회참여체계(AP-RCEM) 동북아 Focal point 및 운영위원
- 2015. 9. ~ 현재 환경운동연합 국제위원회 위원

Sun-song Park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Donggu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ARK Sun Song is a professor at the Dongguk University – Seoul since September 1997. His major fields of research and teaching are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wo Koreas. He gradu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btained a Ph.D. from Paris Nanterre University in economics. He had been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from 1993 to 1997. He was also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SPD, South Korea.

#### 현직

동국대학교-서울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박순성은 1997년 9월부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에 재직 중이며,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 남북한 통일정책을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낭테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에서 4년 간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Bo-hyuk Suh (Research Fellow at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Academic Degrees Careers

- Ph.D. in Political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Comparative Peace Studies (current)
- Vice Presid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current)
- Policy Advis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urrent)
- Policy Advis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urrent)
- HK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dvis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Major Peace and Human Rights

#### Research Result and Publications

- Peace Studies from Korean Perspectives (2019, in Korean)
-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2016)
- "The Right to Peace and the Anti-THAAD Movement."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019)
-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2016)
- "The Right to Peace and the Anti-THAAD Movement."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019)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력**

現 비교평화학회 회장  
 現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現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前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전공**

평화, 인권

**연구실적**

-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2019)
-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2016)
- “The Right to Peace and the Anti-THAAD Movement.”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019)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부교수)

He teaches international security and political economics. His research includes U.S.-ROK-Japan trilateral coordination on engaging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domestic reforms (especially in Korea and Myanmar). Dr. Easley was a Northeast Asian History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JIIA) in Tokyo. He is involved in U.S.-Asia Track II diplomacy with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is an alumnus of leadership programs with the Pacific Forum,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His research appears in academic journals and volumes (available at <http://leifeasley.net>), supplemented by commentary in major newspapers. He complet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with a minor in mathematics at UCLA and received his M.A. and Ph.D. from Harvard University's Department of Government.

Leif-Eric EASLEY는 서울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이다. 그는 국제 안보와 정치 경제학을 가르친다. 그의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관여에 관한 한미일 3자 협력과 국내 개혁 (특히 한국과 미얀마)의 지정학적 영향을 포함한다. Easley 박사는 스탠포드대학교의 동북아역사 연구원과 동경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JIIA)의 초빙 학자를 하였다. 그는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 미국-아시아 트랙 II 외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태평양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리더십 프로그램 동문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는 학술지 및 책 (<http://leifeasley.net> 에서 이용 가능)으로, 부수적으로 주요 신문사의 논평도 있다. 그는 UCLA에서 정치학 전공, 수학 부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Buhm-Suk Baek (Associate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백범석 (경희대학교 부교수)



Buhm-Suk BAEK is Associate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Korea. He is a member of the UN HRC Advisory Committee, and also served as an advisor to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NGOs dealing with human rights issues, an advisor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Research Director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nd an auditor of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is research focuse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ransitional Justice, Law & Development, and 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His work appears in such journals as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Korea Observer, Pacific Focu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nd Asian & Pacific Migration Journal. He also published a book titled TRANSITIONAL JUSTICE IN POST-UNIFICATION KOREA by Palgrave McMillan with Ruti Teitel. He received a LL.B.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LL.M. and J.S.D. in public international law from Cornell Law School.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학사(LL.B.)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석사(M.A.),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국인권재단 감사,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이사, 인권법학회 연구이사, 국방부 인권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저서로는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Palgrave Macmillan) 등이 있다.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at UN OHCHR Seoul)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 Human Rights Office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oul)
  - Madoka Saji serves as Human Rights Officer of OHCHR Seoul.
  - She monitors, reports and advocate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and supports the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 Prior to taking up this position, Ms. Saji worked in OHCHR Geneva and in the UN mission in Afghanistan.
  - She also served as a researcher/adviser at the Permanent Mission of Japa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
  - Madoka Saji는 OHCHR 서울의 인권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보고 및 옹호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 이 직책을 맡기 전에 Saji 씨는 OHCHR 제네바와 아프가니스탄의 UN 임무에서 근무했습니다.
  - 그녀는 또한 뉴욕의 유엔에 대한 일본의 영구 미션에서 연구원 /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

## 2020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 코로나19 시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New Cooperation Tasks for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COVID-19 era)

---

인 쇄 일 2020년 11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전 화 02) 2125 - 9830

팩 스 02) 2125 - 0918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민커뮤니케이션 (02-742-19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21(필동3가) 수송빌딩 504호

ISBN 978-89-6114-783-5 93340

---



# 2020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DPRK

코로나19 시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New Cooperation Tasks for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COVID-19 era



ISBN : 978-89-6114-783-5 93340